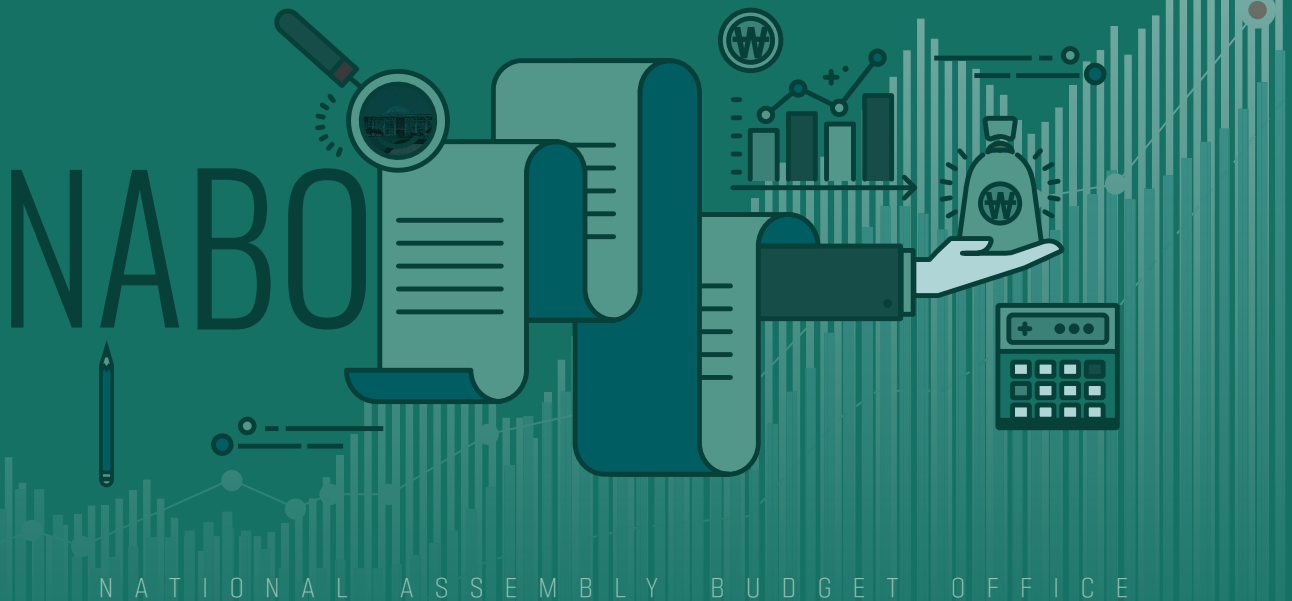




2022.8.

국회에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성민 김윤성 김용오 김국찬 강지혜

윤성식 김태민 박나경 안병후 이미선

고준혁 최해인 진달래 김정선 이한성

김성은 이선화 정성영 허아름 한예슬

최형수 심성택 김소연 송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리라 행정실무원

홍지우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I. 개 요 / 1

1.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1
가. 현 황	1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4
2.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8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8
(1) 현 황	8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9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1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31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36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 38

1. 위원회 공통	38
가. 현 황	38
2. 국회운영위원회	40
가. 현 황	40
3. 법제사법위원회	41
가. 현 황	4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2

CONTENTS

(1)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조치 필요(법무부)	42
(2)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아전용 등의 집행 관행 개선 필요(법무부) ..	44
(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정 사업 적극 추진 필요(대법원)	46
(4) 참고인 연구비 지급 관행 개선 필요(헌법재판소)	48
4. 정부위원회	50
가. 현 황	5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51
(1) 국립묘지 확충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국가보훈처)	51
(2) 수탁용역사업 수입예산 추계 정확도 제고(공정거래위원회)	53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방안 마련 문제(금융위원회)	55
(4)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의 납부 독려 필요(국민권익위원회)	59
(5)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연구용역 관리 문제(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1
5. 기획재정위원회	62
가. 현 황	6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3
(1) 통일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비공개 문제(기획재정부)	63
(2)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기획재정부)	64
(3)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 문제(국세청)	66
(4) 나라장터 통합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 필요(조달청)	68
(5) 통계조사원 중도포기 과다 개선 문제(통계청)	69

CONTENTS

6. 교육위원회	72
가. 현 황	7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3
(1)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위탁 법적근거 마련 필요(교육부)	73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7
가. 현 황	7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8
(1) 종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지속 관리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
(2)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
8. 외교통일위원회	83
가. 현 황	8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4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공외교전략 수립 필요(외교부)	84
(2) 정착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86
(3)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잔여사업 신속추진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88
9. 국방위원회	90
가. 현 황	9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1
(1) 국군외상센터의 차질없는 개원 대책 마련 필요(국방부)	91
(2) 대체역심사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병무청)	92

CONTENTS

10. 행정안전위원회	95
가. 현 황	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6
(1) 자치단체 공통이용 정보시스템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행정안전부)	96
(2)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집행을 추이를 반영한 보조금 교부 필요 등 (경찰청)	97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
가. 현 황	10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1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01
(2)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문화재청)	102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4
가. 현 황	10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4
(1)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사업의 집행저조 문제(농촌진흥청)	104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산림청)	107
(3)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의 연도말 홍보비 편중 집행 문제(해양수산부)	110
(4) 소형유조선 부족 대란 방지를 위한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해양수산부)	111

13.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5
가. 현 황	11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5
(1)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의 실집행 저조(산업통상자원부)	115
(2)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취업실적 제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18
(3)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의 집행 주의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19
(4)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문제(특허청)	121
14. 보건복지위원회	123
가. 현 황	1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4
(1) 다함께 돌봄 사업 실집행을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124
(2)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126
(3)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문제(식품의약품안전처) ..	128
15. 환경노동위원회	130
가. 현 황	13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31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계 변경 및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환경부)	131
(2)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 중단(환경부)	134
(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미흡(고용노동부)	137
(4)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139



CONTENTS

16. 국토교통위원회	144
가. 현 황	14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44
(1) 도시재생 융·출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문제(국토교통부)	144
(2) 광역BRT 구축 사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역BRT 구축계획 수립 필요(국토교통부)	148
(3)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50
(4)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새만금개발청)	153
17. 여성가족위원회	159
가. 현 황	15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9
(1) 새일여성 인턴의 장기고용 확대 등 질적 향상 필요 문제(여성가족부)	159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	163

I.개 요

1.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가. 현 황

국회는 2021년 12월 2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¹⁾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1,881건, 부대의견²⁾ 21건을 채택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³⁾에 따라 4건⁴⁾을 감사원에 감사요구하였다.

시정요구제도는 2003년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⁵⁾ 국회가 결산 심의를 통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다.

고준혁 예산분석관(junekoh@assembly.go.kr, 6788-4651)

최해인 예산분석관(chi0121@assembly.go.kr, 6788-4630)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①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③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④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었다.

5) 「국회법」 개정(법률 제6855호, 2003.2.4., 일부개정)에 따라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변상과 징계만이 예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의 5가지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며,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로 적용되기도 한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197건으로 가장 많고 주의 534건, 시정 220건, 징계 2건의 순이다. 이 중 7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및 조치대상 기관]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이드」, 2020.6.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2	220	521	1,175	(72)	1,846
예비비	0	0	0	13	22	0	35
합계	0	2	220	534	1,197	(72)	1,881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12.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6회계연도 1,805건, 2017회계연도 1,833건에서 2018회계연도 1,356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9회계연도 1,667건, 2020회계연도 1,881건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시정요구	1,805	1,833	1,356	1,667	1,881
	부대의견	25	19	23	19	21
	감사요구	1 ¹⁾	4	4	4	4
결산	시정요구	1,786	1,813	1,302	1,633	1,846
	부대의견	25	19	23	19	21
	감사요구	1	4	4	4	4
예비비	시정요구	19	20	54	34	35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함

1)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감사요구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단계에서 감사대상기관 수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부대의견이 제기되어 최종 의결되지 않았음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12.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변상은 0건, 징계는 6건으로 그 건수가 미미하고, 제도개선이 4,9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16	0	0	326	581	947	49	1,805
2017	0	2	320	568	983	40	1,833
2018	0	1	198	414	800	57	1,356
2019	0	1	234	523	1,021	112	1,667
2020	0	2	220	534	1,197	72	1,881
합계	0	6	1,298	2,620	4,948	330	8,542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12.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회계연도(2018회계연도 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한 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반복시정요구 사항은 240건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52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되었다.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183	200	137	186	240
전체 시정요구	1,805	1,833	1,356	1,667	1,881
반복 시정요구 비율	10.1	10.9	10.1	11.2	12.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고,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개년(2018~2020회계연도) 동안 모든 해에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1회계연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과 관련하여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단가 및 사용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편성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2022년 동 비목 예산액으로 2021년 대비 8.8%(91억 700만원) 증액한 1,1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2021년 집행액인 1,180억 7,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2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세심판청구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인 90일이 지나거나 도래할 경우 청구인에게 안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2021년 우선처리절차의 적용대상을 확

대하고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실무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배정통지와 함께 ‘처리기한 90일 경과시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 중이고 2021년 9월부터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경과시 해당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자발송 중이므로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조세심판청구의 평균처리일수는 2019년 160일 → 2020년 178일 → 2021년 196일로 증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사업수입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비축물자 비축 및 방출 계획과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2021년부터는 최근 3년 방출실적 평균액에 최근 3년 평균수익률을 이용한 추계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1년에도 예산현액(42억원) 대비 수납액(399억 9,400만원) 규모가 과다하여 수납률이 952.2%에 육박하는 등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여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보전금을 축소하면서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2021. 11.)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보라매(R&D) 사업의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에 대비한 사업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납된 분담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1월 한인기간 최종 합의를 통해 분담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분담금이 미납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으나, 동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사업 일정 및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을 할 계획이고, 설계 전 공공건축기획·심의, 설계 공모 준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더 이상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 사업 실행행률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으나,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2021년에도 운영 목표였던 750개실 중 49개만이 운영되어 예산액 39억 4,700만원 중 2억 8,200만원만이 집행되어 7.1%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는 목표를 100실로 크게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에는 유희교실 부족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감소한 초등돌봄교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 수요의 산정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2018~2020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중 2021회계연도 조치가 미흡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여부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8	2019	2020	
법무부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	○	○	○	2021년 편성액 1,029억 대비 집행액이 1,181억원으로 이전용 152억 발생, 2022년 예산 1,120억원은 2021년 집행액에 못 미쳐 부족 예상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조세심판처리기간 단축	○	○	○	조세심판청구의 평균처리일수 지속적 증가 2019년 160일 → 2020년 178일 → 2021년 196일
조달청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	○	○	○	2021년 비축물자 사업수입 예산현액은 42억원이고 수납액은 399억 9,400만원으로, 수납률이 952.2%에 육박하여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 문제가 반복됨

부처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여부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8	2019	2020	
국방부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	○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는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 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방위사업청	보라매(R&D) 인도네 시아 분담금 관리	○	○	○	2021년 11월 한·인니 간 최종 합의를 통해 분담금 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현재까지 분담금이 미납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음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	○	2021년도 계획현액 62억 8,300만원 중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57억 6,300만원 은 불용함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실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	○	○	○	2021년 학교돌봄터 인건비 · 운영비 예산액은 39억 4,700만원이나 집행액은 7.1%인 2억 8,200만원으 로 집행률이 저조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 현 황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2년 3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2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881건에 대하여 1,534건(81.6%)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47건(18.4%)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2016~2018회계연도 결산 후속 조치결과에 있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10~13% 내외 수준이다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6회계연도 결산	1,781	1,549	232	13.0
2017회계연도 결산	1,810	1,577	233	12.9
2018회계연도 결산	1,356	1,171	185	13.6
2019회계연도 결산	1,647	1,377	270	16.4
2020회계연도 결산	1,881	1,534	347	18.4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⁶⁾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라고 보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조치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관 부처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저축 한도가 월 20만원에 불과하여 재산형성을 위한 적정 저축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농어민들의 재산형성 효과가 크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국회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소관부처 조정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제도개선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을 뿐 2022년 6월말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의 과제명과 연구자명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건 내외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아 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2021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도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물론이고 과제명도 비공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세사업인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교육은 2020회계연도에 교육대상자 1,037명 중 취업 인원은 25%인 262명으로 매우 저조하여, 국회는 조선업 생산현장에서 취업 성과 저조 등 인력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 중 생산기술 혁신 역량강화의 교육대상자 1,052명 중 311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전년 대비 4.3%p 상승한 29.5%로 나타나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생산기술혁신채용연계교육 사업 84.6%, LNG화물

차기능인력양성교육 사업 49.0% 등 다른 세사업에 비해 취업률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예산과다 및 과소 편성 또는 실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거나 면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 예산은 수입결손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국회는 수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제 실적을 감안한 예산 편성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수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입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는데, 202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자체수입예산 중 수탁용역예산액을 2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입실적은 17억 5,100만원에 그쳐 9억 9,0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 수탁용역 수입예산액은 2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300만원 감액하였으나,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수탁용역 수입실적을 고려하면 실제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은 2011년 착수 이후 2021년 5월까지 4차례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고에너지구간 기술력 미확보로 주요 마일스톤 및 장치구축 관리지표를 변경하였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집행률은 평균 48.4%였음에 따라, 국회는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45.0%로 전년(39.0%)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이월액은 986억원으로 전년(915억원) 대비 증가하여 지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정부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34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치미완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차차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시점에도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이행완료 시 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⁷⁾에 따르면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재차 제출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2년 3월에 제출하였고,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2년 5월에 제출되었으며, 그 이후 정부의 이행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즉, 2022년 3월에 제출한 조치결과에서 조치미완료(조치중) 건수가 499건이었는데, 5월 제출된 조치미완료 건수는 그 중 152건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나머지 347건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후 이행여부에 대해 국회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직전년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당해연도 초와 결산시점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치미완료 건의 사후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후속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⁸⁾

7)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 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327호)

둘째, 조치미완료 사항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의 입안 및 발의 여부, 그리고 심사의 진행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2년 4월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중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비 편성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필요 등 33건에 대해서,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의 경우, 정부는 법률안 발의(제출) 여부 및 논의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법무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비 편성방안 검토 필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계류 중 ◦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 기재부와 협의 예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범위 조정 및 성과제고 필요	◦ 관할범위 조정은 주무부서·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법률구조 사업과 사업 예산 분리 편성 및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의 이관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별 조정사건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 및 유관기관과 관할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2023년 이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협의 진행
	◦ 검찰청 소관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 방식과 추진 시기 검토 중
감사원	◦ 재심의 청구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강화하고, 연장사유 통지 및 연장 시 적정 처리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 현행 감사시스템에서 감사결과의 완성도·신뢰성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관리적 문제를 점검	◦ '22년 신규 접수분부터는 재심의 처리단계별 기준기간을 설정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접수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처리 기간 연장 사유 및 예정 처리기한을 고지하는 ‘중간통지제도’ 도입을 추진(「감사원 재심의규칙」에 반영 예정)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감사원	◦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요류수정손익 등의 발생을 줄여 회계요류를 최소화하여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보고 시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1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부처별로 전기요류수정손익 발생 원인을 분석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 등에 결산감사 결과를 시행 시 주의요구 등 처분요구 실시, 개선방안 통보할 계획 ◦ 감사의견(종합감사의견) 표명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기재부 및 부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음('22년 하반기 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임시조직 운영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임시조직 파견인력이 국무조정실 정규 직제와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생활SOC 추진단 존속기한 설정(~'23.12월)이었으며, 규제혁신추진단 등 신규 기화단 설치시 존속기한을 근거법령에 규정하는 등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맞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중임 ◦ 범정부적 정책 및 다수부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임시조직의 업무특성상 파견인력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파견인력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 중임
금융위원회	◦ 향후 집행 추이에 따라 출자를 하고 미집행 출자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준비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 집행을 제고 등을 위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여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형자산 외 재고자산매출채권 등을 대상에 포함하여 동산담보 회수지원 확대 추진 ※ 다만, 부실채권 매입은 악성채권 부실발생시 회수리스크를 완화하는 안전장치 구축이 주된 정책목적으로써 단순히 집행률로 정책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민권익위원회	◦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신고 등 유사한 성격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일하고, 나아가 보호·보상제도의 일원화 검토 필요	◦ 보상금 지급률 30% 통일을 포함한 '보호·보상법 일원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논의를 바탕으로 지급률의 규정 형식을 법률 또는 시행령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여 개정 추진 예정 ◦ 장기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외한 법령이 규율하는 보호보상제도를 삭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보상제도를 통해 보호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원화 추진 예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관 사업의 출연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출연기관 업무 수행의 근거를 보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온라인 사업자가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가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 명확화 <추진일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2.2월) - 법제처 법안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의결(~'22.6월말) ◦ 온라인 자율규제 단체 지정확대, 자율규제단체 지정확대를 위한 협·단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21.10~12, 총8회) ◦ 자율규제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22년 하반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 연채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위하여 각 중앙·지방의 채권관리관이 채납자 재산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채납자의 재산 및 소득조사 결과에 대해 압류 등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여 채무자 재산정보 요청 근거 마련 추진 예정 ◦ '20회계연도 국가채권 성과평가 시 위탁 후속조치 실적을 지표에 반영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기획재정부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기준을 마련하고,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통합계좌에 유보시킨 여유자금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현재 국고금 운용 수익금의 세입이입과 관련하여 내부기준을 마련(19.7)하여 운용 중이며, 운용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해당 기준의 적정성, 법령상 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
	기획재정부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제출 일정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조기 제출을 위해 감사원과 결산 검사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 - 감사원은 국가결산 검사 병행 및 감사인력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부 단축 제시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단축가능 일정을 화신할 예정(2분기중) - 감사원 화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공운위에 보고 후 공운법 개정 추진 예정(22. 下)
교육부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위탁 법적근거 마련 필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1.7.30.발의) 개정 추진 계속
	국립대학 자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국립대학법안」(21.11.17.발의) 제정 추진 계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원격출석 허용 요건 및 범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2021년 4분기에 예정된 제20기 국내 출범회의 개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원격영상회의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국방부	임기제부사관에게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해병대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부사관 전환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22년 차우개선으로 임기제부사관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될 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결정(21.12월) * 관련법령(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대통령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완료(4.28), 법제처 심사중(8월)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방부	◦ 주거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주거시설 운영 효율화 관련 공실최소화를 위해 타군 관리부대 간 주거시설 상호 지원 개념 및 절차 마련(~22.12월) ◦ 권역별 관리체계 기반마련을 위해 국방 시설통합정보체계 고도화사업 간 주거 기능 탑재/개선예정(~27년)
	◦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성과를 충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취업기관 및 업종, 고용형태, 고용 유지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시정)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의 기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지원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개선을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의원입법)을 검토 추진 중임(군인사법 개정안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21.12.)/국방위 계류) ◦ 취업활동지원 예산(국방전직교육원 기관운영비 포함)은 군인복지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 ◦ 다만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은 국가의 책무(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군인복지기금의 수의 감소추세로 취업활동지원 예산의 축소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음 - 2023년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환 요구(22.3월~)
	◦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조정안 제인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	◦ 무기획득 과정 중 방사량이 소요수정요구 및 추가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관련규정(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개정안 마련 : 5월 -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조정 : 하반기 - 검토 및 개정 추진 : 12월말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병무청	◦ 국외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등 병역이행 종료연령 상향 추진 ◦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변경 방지 법안 추진 중
행정안전부	◦ 법률 개정을 통해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는 법의관 처우 개선 등 법의관 충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규정과 실무행정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검토하겠음 ◦ 법의관 인력 저변 확대 및 감시 인프라 구축 - 법의관 역량강화 방안 연구(영역수행) (20.5~10) - 21대 국회에서 '법의관법'* 제정 추진 * '21.3.4. 의원입법 발의(진선미 의원) - 법의관과 신설 관련 협의체 구성(추진 중) * '21.12.1.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와 업무협의 및 의견청취 완료 * '22~ 복지부의 중대본 검토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예정
경찰청	◦ 소년법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업무상 공유 처리하는 개인 민감정보 등에 대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등이 담보되도록 전문가 참여 지원의 합리적 기준 수립, 해당 사업의 실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 등을 실시할 것	◦ 전문가참여제는 소년법 제9조(조사방침), 제12조(전문가의 진단)를 준용하며 각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 조항은 없음 ◦ 소년부에서 조사 심리 시 경찰의 진단 결과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년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참여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법 개정 과정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비밀엄수·자료 관리 등 의무 부여 조항 신설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개정 지속 노력 예정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심의회 운영을 위한 조사업무 위탁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보상 조사업무 관련 공단 위탁 근거 마련 추진¹⁾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정치분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가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수립 관련 주도적인 제도개선 필요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해 「(가칭)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 ‘22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 완료할 계획
보건복지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내실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 관련 지원(전해철 의원 안 상임위 계류 (2021년 2월)중),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에 대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추진
	보건의료정보원의 특수법안화 검토 필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특수법안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정춘숙 의원안, 전봉민 의원안) 입법 관련 지원 중이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타 공공기관 지정 완료('22년 1월)
고용노동부	변제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향후 재직 근로자에 대한 채당금 지급에 따라 변제금 회수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 시행)을 통해 조사 권한 및 재산조회 강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 중 - 장기미회수채권의 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 - 아울러, 회수율 제고를 위한 별도 방안 마련추진(대지급금 반복수급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여부 점검, 변제금을 미납한 고액 사업주에 대한 집중 회수 추진)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고용노동부	◦ 해당급 조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대지급급 조력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업장 규모 및 소득기준 등 요건완화 방안 마련추진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 30인 미만 / (소득요건) 전체 근로자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사업장 → 산장인 본인 월평균 보수 350만원 이하 / (지원단가) 업무별 금액 인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보조율을 사업수행방식에 맞게 개정할 것	◦ '20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업무 협의 진행하였으며(21.11.3),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서 검토필요 입장표명으로 법령개정을 위하여 추가 협의 예정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제공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 근로기준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률 개정 등을 위한 관련사항 협의 중

주: 1) 인사혁신처는 2022년 7월 현재 조치완료하였다고 설명

자료: 1. 전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023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 4월 기준 조치미완료된 시정요구 중 대법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에 통합 편성·집행 필요 등 45건은 예산의 증액이나 예산사업의 신설,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시정요구 이행을 위한 필요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결산심사의 시정요구가 예산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예산조정 필요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대법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 반회계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통합하여 편성 집행할 것	'22년 1월 기금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에 제출하였고 향후 2023년 예산 편 성과정에서 지속하여 협의하겠음 - 향후 2023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금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 통합 편 성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임
	- 트라우마 치유 사업참여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조사 파악하고, 개인 상담의 방 문형 수행 여부를 고려할 것 - 법원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한 트라우마 치 유 사업을 기금에 일원화하여 편성	-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20년 8 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코로나19 영 향으로 집행률이 저조 '21년 하반기부터 법관 등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이용의 신속성을 위하여 기존 신 청 후 선정하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또한 방문 화상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11월에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시범 적으로 운영 '22년에는 확대계획 - 사업예산의 일원화를 위하여 2023년 예산편성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피고인 신 청주의에 대한 보완, 국민참여재판 신 청 사건에 대한 배제사유 구체화와 함 께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 소 개 활성화, 국민참여재판 진행기법 개 선, 법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 구검토하기 위하여 '22년부터 사법참여 기획단을 새로이 구성·운영 예정 '전염병 상황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 안 장려단 구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활성화 방안 모색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홍보기법 및 홍 보매체 등의 홍보방안 다각화 - 국민참여재판 진행기법 개선 등을 위해 출석한 배심원 상대로 설문조사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대법원	반부패는 법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규모의 법관 인건비를 계상하여 매해 발생하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것	- 국민의 적당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화를 위해 적정 판사 수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신규임용) 법관임용절차의 접근성을 매년 개선 판사 결원율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5.79%(정원 외 판사 제외)를 유지 -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등의 단계적 상향을 3년 유예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어 향후 3년간 신규 자원 대상자 유입이 가능하게 되어 안정적 판사 충원을 통해 결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건비 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전국범죄해조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동 사업을 연구사업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양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23년도 예산요구시 '전국범죄피해조사업'이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중 - 일반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화관련 사업을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23년부터 통합 편성할 수 있도록 연구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중
국가보훈처	- 자녀수당 지급대상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인상하여 점차적으로 제적·승계자녀와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마련 -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선양사업 평가 및 우수사업 등에 대한 차등지원 등 보훈단체 선양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6.25 신규승계자녀 수당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년 연구용역 실시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23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추진 - 보훈단체 선양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예산협의 중 '보훈단체 보조사업비 인센티브제 운영방안' 마련('23년 하반기) - 외부 전문업체 용역계약을 통한 보훈단체 선양사업 지원 평가 위탁 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등 보조금 추가 지원액 반영('24년 연 117백만원)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의료지원사업의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할 것	◦ 대상별 진료인원 및 단가 등 진료실적의 추이 분석, 과거 진료비 결산값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진료비 편성 추진
	◦ 생존 애국지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방주치의 제도'를 BOVIS사업과 연계하여 독립유공자 전체에 대한 전면 실시 및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방안 검토	◦ 독립유공자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보훈대상자 방문진료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22.4 ~8월 실시 중
	◦ 특별예유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고령의 애국지사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3년 특별예유금 등 애국지사 예우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하여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 각 진료대상별(국비, 감면) 진료현황 및 인원 등 추계를 분석하여 적정 진료비가 '23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추진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결정짓고, 최근 회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 88골프장 매각여부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골프장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최근 수입실적 등을 고려한 적정 수입계획 요구 등 재정당국과 협의 중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할 것	◦ 기술료 제도 해외 사례 파악,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등에서 제시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 -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재부 2차관 주재) "R&D 기술료 제도 개선 및 투자방식 다변화 방안" 안건 상정(22.1.18) - 정부납부기술료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협약 체결(22.2.17) - 기술료관련 전문가 및 사업단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22.1.20, 2.24, 3.21, 5.11, 6.22, 7.13) ◦ 향후 정책연구 수행(8월), 토론회 이해관계자 등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10월), 제도개선안 마련(22년말)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할 것	◦ (국재방송교류재단) '23년 부처간 편성 시 프로그램제작비 외 경상운영비성 예산인 위성사업비, 방송시설운영, 방송기자재 구입 예산을 제외하여 재출(43.3% 삭감) - 또한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기재부 방문, 문제부 협조요청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 중 ◦ (국악방송) 소관불일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악방송 지원예산의 문제부 이관 관련 사항을 문제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외교부	◦ 연례적인 예산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소요에 부합하게 면밀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 매년 실소요에 부합한 교제여비 예산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예산 증액을 적극 협의해온 바, 2022년의 경우 총 82억으로 4억을 증액하였고, 2023년 예산편성에도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통일부	◦ 통일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재정적인 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증액하는 방안 마련 ◦ 통일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성기금인 남북협력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 향후 대북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공자기금 예산 아지상환액 뿐만 아니라 △실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대비한 사업비 △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 ◦ 전입금 중 여유자금에 대해 기재부 외 부위탁운용관리(OCIO)에 투자운용을 위탁실시하는 등 한정된 전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 ◦ 향후에도 전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사업 활성화 가능성에 지속 대비하겠음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통일부	◦ 기금 여유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할 것 ◦ 남북협력기금의 재정건전성, 남북관계 변동 상황, 남북협력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손처리 등 용자 원리금 관리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	◦ 자체 수입이 적고 정부내부수입(공자기금,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남북협력기금 특성상 정부출연금을 통한 공자기금 원금 상환 차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정부출연금 규모의 확대는 대규모 재원 소요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겠음 ◦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협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채무재조정, 금리인하 등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음 ◦ 또한, 현상방문 등 기업 동태점검을 통한 잠재적 부실기업 파악, 대위변제 청구를 통한 연체대출 회수 등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 파산종료 등 법적 절차 완료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금건전성 제고 및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방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누락된 국유재산을 재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국방부가 직접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21.8월하여 제도를 개설했음) - 실태조사(∼21.12)로 국방부 국유재산 대장 누락 재산 등록 및 지적공부와 일치화 조치 실시,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지속 - 무단점유 적발 등 실태조사 전담 공무원 인력 확보 추진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에 실태조사 전담 공무원 증원(10명) 요청, 기획관리관실 심의 통과 완료
	성범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내부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73개 개선과제) 중 군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15개 과제 추진 중 - 수사기관 등에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인력 교육 강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마련, 강지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기재부와 지속 협의, 병역법 일부개정 추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용 컴퓨터의 리스방식을 통한 취득 재검토 필요	'23년부터는 업무용PC 구매비용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 - '23년 중기사업계획 및 본예산에 업무용PC 구매 자산취득비 편성 요구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편성 필요	◦ '18~'20년도까지는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감소하였으나, '21년도는 퇴직자 및 휴직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상황으로, '21년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 중 ◦ '22년도 예산 편성 시 실소요액을 편성하여, '22년도 불용규모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21년 2,173억 대비 6억 감액한 2,167억 반영) ◦ 향후 더욱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 법정민간대행사업인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동 사업을 향후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간대행 추진의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	◦ 국회 자작사항을 반영하여 '23년 예산 부처안에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사업 비목 변경하여 기재부에 요청('22.5.) ※ 비목 변경해당 내역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7조) 민간대행사업비(320-08) → (수정) 민간위탁사업비(320-02)
보건복지부	◦ 장애인동수당 사업 분리 편성 필요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보다 효과적인 사업평가를 위하여 장애인동수당 예산 세부사업 분리를 추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음
	◦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	◦ '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재지정기준 강화 필요	◦ 연구 용역 결과 및 병원 연구 성과 기술사업화 강조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지정기준(안) 마련 ◦ 기술 사업화 강화를 위해 연구 참여 임상 의사, 연구전담의사, 연구비 기준을 상향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및 기술료 항목 신설 - 관련 고시 개정 추진 후 '22년도 재지정 추진 예정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의 이관 검토 필요	◦ 입양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이관(아동권리보장원) 필요성 및 방안 등 검토 중 ◦ 다만, 아동복지법령상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은 보장원이 위탁하여 수행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3년 예산편성시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 암검진 비용 미지급금 해소	◦ 중기(22-26) 예산 부처안에 23년 예산안으로 미지급금(17,222백만원) 21년 미지급금 요구하였으나, 일부(15,738백만원) 반영 ◦ 23년 본예산안에 미지급금(17,222백만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안 편성시 재정 및 기재부와 협의 예정
	◦ 토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세입예산 편성 주의	◦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평단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20.7.)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지 매각비용 및 시점 등 검토 예정
	◦ 사업대상 추계 정확도 및 실집행 실적 제고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1년말 기준 사업대상 추계인원 대비 실제 수혜자 비율 93%(12,874명/13822명), 실집행률은 85.8%로 개선 - 23년 예산편성시에도 최근 실제 수혜자 수와 실집행액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예정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예산이 집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갔음. '23년예산 편성시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예정
	◦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교육센터 확장 필요	◦ 23년도 예산안에 교육센터 확장 설계비 5억 원 반영 요구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환경부	환경위성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할 것	2023년 예산부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세부사업에서 별도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23년 예산부터 별도 분리하도록 기재부와 실무 협의(22.4.12)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금의 정확한 추계(20, 연구용역 실시)를 바탕으로 중기사업계획(22~26) 수립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출연금을 확대(안) 제출(5억→80억 '22.1월) - 부담금 심의위원회(가재부, '22.6월 예정)에 부담금을 인상한 상정 후 심의 예정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 편성시 일반용역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년 예산 운영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장애인거주에 대해서도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에 '22년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 장애인의 주거 편의성 제고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음
	연구용역과제의 공고기간을 충분히 늘려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동 사업의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편성하거나 일반연구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비에 준하는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연구비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겠음
	사학진흥기금 예탁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 등을 고려시 현행 이자율 1.5%도 충분히 낮은 이자율로 판단, 추가 인하 신중검토 입장 - 학생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율 1.5%→1.0%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진행 중
	일반회계 편성 사업과 교통시설특별회계 편성 사업 간 명확한 구분기준을 마련할 것	'22년 예산 과목 구조개편 과정에서 동 사업이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예정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산제적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인력이 아닌 정규직 인력의 확대 편성 등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향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재정당국과 센터의 정규직 확대 관련 지속 협의 예정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확대 추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개선 차원에서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 조정을 검토할 것	돌봄의 보편적 지원과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 소득 구간 또는 유형을 변경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2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수립
	살수요자와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검진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실적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수검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확진검사 대상자가 적시 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건강검진 수검인원 및 검진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에 반영 검토 - 법률 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가 지표에 건강검진 실적을 포함하여 센터별로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조치 예정 - 확진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개개인별 우선 및 문자안내를 통해 수검을 독려하고, 자치체별 수검 현황을 수사로 관하여 적시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 예정¹⁾ -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시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예정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여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집행 한도를 현실에 맞추어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수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부족분을 다른 내역사업의 집행 잔액에서 집행하는 행태 방지	◦ 운영비 부족 개선을 위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도 준수 등 관리감독을 강화
	◦ 새일센터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부가기업맞춤형, 디지털비대면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사업 확대 ◦ 양질의 취업서비스 제공과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처우 개선 등 예산반영 추진

주: 1)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실시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가 지표에 건강검진 실적을 반영하였다고 설명('22년 6월)

자료: 전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⁹⁾ 21건에 대하여 2022년 5월 기준 조치완료 12건, 조치 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중은 2017회계연도 42.1%, 2018년도 39.1%, 2019회계연도 47.4%, 2020회계연도 42.9%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대의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7회계연도 결산	19	11	8	42.1
2018회계연도 결산	23	14	9	39.1
2019회계연도 결산	19	10	9	47.4
2020회계연도 결산	21	12	9	42.9

자료: 대한민국정부,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각 연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감사원	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기관정기감사시 조세심판과 행정심판이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점검하고, 해당부처는 감사결과에 따라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	- 향후 정기감사 실시 시 행정심판 처리기한 준수 여부, 미준수 사유 등을 점검 필요시 제도개선방안 마련 계획 - 조세심판은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청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23년 예정된 「신고납부 지원 및 사후 점검 실태」 감사시 심판청구 처리 지연 사유 및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조치중

9)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감사원	◦해양경찰청 기관정기감사 시 합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응급수리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응급수리 소요 빈발 원인에 대하여 점검	◦해양경찰청 기관운영감사 진행 중 (‘22.1.24.~5.6.)으로 감사가 완료 되면 신속하게 검토·처리할 예정	조치중
	◦향후 UH-60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국방부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	◦UH-60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방사청 직원의 기밀유출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수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감사 필요성 검토	조치중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	◦다양한 의료수요 대응 및 근접 진료 제고를 위한 의료기반 구축,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역할 정립 및 의료전달 체계 구축,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조치중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대상자가 고궁·공원의 시설이용료 면제·할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강구	◦(보훈처) 해당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원입법)이 정부위에 계류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문화재청) 개정안에 대한 협조와 고궁 이용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담길 동법 시행령 개정시 현재 4대궁·종묘·조선왕릉의 국가유공자 무료입장 기준에 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의 궁능 무료입장을 인정하기로 국가보훈처와 협의완료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비목 상호 간 자체 변경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기준을 마련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및 유의사항 개정 반영	조치완료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 등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집행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용어 중복사용 수정 등을 개정하여 '22년 집행지침에 반영, 국회 보고방법에 대해 예결위와 협의 진행중	조치완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 신장이나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시도교육청의 '21년 교부금 정부 추경 증액분 및 '22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력 수준 신장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부교육감 및 예산담당과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조치완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디지털배움터 발전계획” 마련(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정보화교육과 차별화(교육장소·커리큘럼 등) 하여 사업 간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운영)	조치완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혁신도전프로젝트 등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획된 연구주제들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	◦현행 제도상, 예타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예타를 받고 있으며,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타를 회피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관리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통일부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이 보조사업자 명칭 등 비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신설, 국회 등의 요구가 있을 시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조치완료
국방부	◦군급식 제도개편 시 농수산물 식자재 조달에 있어 지역 농어민과 상생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과 같이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는 계속 이행할 것이며, 지역산 인증제 활용 등 지역 농어민과 상생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조치완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비직제 직위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행안부) 경찰청에서 비직제기구로 운영하던 3개 과장급 직위에 대해 정규화 1건 및 폐지 2건 완료 ◦(기재부) 경찰청 운영 비직제 직위 중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은 정규 직제에 반영하기로 행안부-경찰청-기재부간 협의 완료	조치완료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시 적절한 인력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인력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의 채용심사위원은 외부 인사를 과반수 구성 명시	조치완료
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관련하여 의대생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한계점 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예정,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조치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 작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고용노동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2021회계연도 결산제출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	◦국회 제출예정 ¹⁾	조치중
공통사항	◦정부는 국회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 시 ‘조치중’으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향후 처리방안·기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	◦각 부처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작성시 조치기한 및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그에 따른 1차 점검결과(1월말 기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2월말)	조치완료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 등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시 향후 손실, BIS비율, 보증배수 등을 검토하여 적정 출자·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자·출연예산 편성시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지속 검토 ◦’23년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예산 편성시에도 향후 손실, BIS비율, 보증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방안 검토 계획	조치완료
	◦정부는 연례적 이·전용과 과다 불용 등 국회 결산 심사 시 의결된 시정요구사항의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국회의 징계요구 가능 유의	◦2021년 연말 이월 및 전용,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지속 독려 ◦’22년 상반기 중, 국회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별도 추가 공지 예정	조치중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반적 현황, 집행 실적 및 사업효과,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KDI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전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KDI 재정지원 일자리 효과분석연구(‘22.2월~’22.12월) 추진으로 향후 국회 보고 예정	조치중

주: 1)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대의견에 대해 2022.5.26. 조치완료하였다고 설명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법」제127조의2¹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2021.12.2.)한 4건에 대해 2022년 4월 감사결과(2022.4.29.)를 제출하였다.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당시 국세청 등 일부 부처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후 대민 업무 등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청,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조달청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국세청은 향후 대민업무 수행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고 민간에 공급되는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민업무 수행 등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구매·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 촉구 ◦새만금청 4개 기관에서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대민업무 수행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되지 않음

10)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과다 집행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연말계약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일부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적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집행, 집행증빙 누락,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6개 위원회에 주의 17건, 통보 1건 ◦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정당한 계약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의계약,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마비 등 문제로 6개 위원회에 주의 7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신축청사 입주가 무산되었는데도 소속 공무원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및 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특공 대상관리 분야, 특공 부적격자 검증·처리 분야에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 - (특별공급 대상관리 분야) 국토부와 행복청에게 특별공급 대상기관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비대상자에게 공급된 주택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후 공급 취소 등의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 등 - (특별공급 부적격자 검증·처리) 고용부등 12개 기관에 특공 당첨 직원의 공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부적격자에게 공급된 주택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공급 취소 등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 등
[범부처전주기산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포 장수에 대한 감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기술이전 관련 정부납부기술포를 장수한 업무에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납부기술포 장수의 적정성과 최근 개정된 해외 기술이전 정부납부기술포 장수 기준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도록 범부처전주기산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포 장수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장수기준 적용의 적절성, 장수관리의 적정성, 장수기준의 타당성을 중점으로 감사 결과, 1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 - 사업단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술포 장수보고를 하지 않아 해외 기술이전 과제에 대한 정부납부기술포 장수를 누락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1. 위원회 공통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제도개선 1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총 4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2건,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0	0	0	0	1	0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4	2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이행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나, 조치실적이 저조하고 동일 시정요구 반복 ○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이행실적 제고 및 연례·반복적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집중관리체계 및 부처협업을 통해 신속히 이행 노력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2.4.30)
◦정부는 국회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 시 ‘조치 중’으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향후 처리방안·기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	◦각 부처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작성시 조치기한 및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기재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그에 따른 1차 점검결과(1월말 기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2월말)	조치완료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 등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시 향후 손실, BIS비율, 보증배수 등을 검토하여 적정 출자·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자·출연예산 편성시 손실률 등을 감안 하여 편성하도록 지속 검토 ◦’23년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예산 편성시에도 향후 손실, BIS비율, 보증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방안 검토 계획	조치완료
◦정부는 연례적 이·전용과 과다 불용 등 국회 결산 심사 시 의결된 시정요구사항의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국회의 징계요구 가능 유의	◦2021년 연말 이월 및 전용,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지속 독려 ◦’22년 상반기 중, 국회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별도 추가 공지 예정	조치중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반적 현황, 집행 실적 및 사업효과,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KDI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KDI 재정지원 일자리 효과분석연구(’22.2월~’22.12월) 추진으로 향후 국회 보고 예정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2. 국회운영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50건으로 시정 1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28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43건이며, 조치중 7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없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0	0	0	3	2	0	5	5	0
대통령경호처	0	0	0	3	1	0	4	4	0
국회	0	0	1	9	16	(1)	25	23	2
국가인권위원회	0	0	0	7	9	0	16	11	5
합계	0	0	1	22	28	(1)	50	43	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3. 법제사법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142건으로 시정 21건, 주의 52건, 제도개선 76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05건이며, 조치중 37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중 3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등 4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0	0	9	11	32	(1)	51	29	22
법제처	0	0	3	6	7	(1)	15	15	0
감사원	0	0	1	9	9	(1)	18	14	4
헌법재판소	0	0	3	4	10	0	17	15	2
대법원	0	0	5	22	18	(4)	41	32	9
합계	0	0	21	52	76	(7)	142	105	3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감사원	3	0	3
합계	3	0	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조치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법무부의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간 540명의 대체복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후 2020년 540명에 대한 보수액으로 2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 및 합숙복무 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대체복무요원이 10월에야 소집되는 등 복무기간이 법무부 예상보다 짧아지고 소집인원수도 106명에 불과하여 대체복무요원 보수 집행액은 예산액의 2.96%인 7,9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합숙복무시설의 공사 진척상황에 따른 소집 가능인원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 보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2년도 예산편성 시 합숙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배치가 완료된 대원 651명과 2022년 소집가능인원 435명의 배치일정을 반영하여 60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년도의 경우에도 2020년도와 같이 대체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도의 경우는 소집계획 변경(435명→403명) 및 합숙복무시설 공사 지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동 문제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대체복무인건비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2022년도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경우 대체복무 이병 540명의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예산 2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합숙복무시설 개소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0년도까지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은 106명으로 집행액은 7,900만원에 그쳤다.

2021년도의 경우에는 대체복무 일병 161명 및 이병 919명의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예산 6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숙복무시설 개소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말까지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이 651명으로 집행액은 23억 1,2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 대체복무요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편성액	집행액	편성 내역
2020	2,671	79	- 대체복무 이병 540명*408,100원*12개월*1.01
2021	6,083	2,312	- 대체복무 일병 161명*496,900원*12개월*1.01 - 대체복무 이병 919명*459,100원*12개월*1.01
2022	6,038	2,661	- 대체복무 상병 271명*610,200원*12개월 - 대체복무 일병 488명*552,100원*12개월 - 대체복무 이병 134명*510,100원*12개월

주: 2022년 집행액은 6월말 기준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법무부는 2020년도 및 2021년도 배치가 완료된 대원 651명과 2022년 소집 가능인원 435명의 배치일정을 반영하여 60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2021.12.2.)하였으나, 2022년도 5월 기준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 추가적으로 소집할 대체복무요원의 수는 403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영월(교) 생활관의 경우 BF 예비인증 등으로 설계용역 기간 연장되어 2020년도 공사비 이월, 무연고 분묘(3기) 발견으로 공사 중단(약 4개월)으로 2021년도 공사비 불용(재이월 불가)로 인하여 2022년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합숙복무시설 개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2022년도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요원 인건비 불용이 재차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2022년도 합숙복무시설을 일정대로 개소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일정대로 진행하여, 대체복무요원 인건비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

1) 다만, 법무부는 계획인원의 변경(435명→403명)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보수 집행예정액을 산정한 결과 편성액의 98.6%인 59억 5,276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합숙복무시설 공사가 예산 편성 없이도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의 집행 관행 개선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공공요금 단가와 연평균 사용량 등 예산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하지 못한 것으로,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 법무부에 대해 예산편성 시 수용인원, 물가 상승률, 공공요금 단가 및 사용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추계·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집행 문제를 완화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2년도 관련 예산을 수용인원 추세와 공공요금 단가 인상율, 2020년 집행액(1,120억) 등을 고려하여 9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으로 2021년 대비 8.8% 증액한 1,1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1년 집행액(1,181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2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공공요금을 적정규모로 편성하여 과도한 이·전용 등의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에서 예비비를 포함하여 최소 152억원에서 최대 245억원 규모의 이·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7	75,376	75,376	-	4,819	10,996	91,191	91,190	-	1
2018	77,063	77,063	-	24,479	-	101,542	101,541	-	1
2019	82,981	82,981	-	22,867	-	105,848	105,846	-	1
2020	94,032	92,432	-	19,594	-	112,026	112,019	-	6
2021	102,913	102,913	-	15,166	-	118,078	118,073	-	5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공공요금의 부족한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인원과 실제 수용인원의 차이에서 기인한 점도 있다고 보여지나, 2018년과 2019년, 2021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29억원과 196억원, 152억원의 이·전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인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5년간 예산편성 기준인원 대비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편성 기준인원(A)	53,892	56,495	55,200	53,200	52,500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B)	57,298	54,744	54,624	53,890	52,368
수용인원 격차(A-B)	△3,406	1,751	576	△690	132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공공요금 각 항목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에서 많은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이 상이한 관계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요금단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공공요금 각 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공공요금 종류	2021년			2020년 집행액 (C)	2020년 대비 집행액 증감액(B-C)
	편성액 (A)	집행액 (B)	차액 (A-B)		
수용자 건강보험료	19,924	17,828	2,096	19,847	△2,019
상수도요금	30,560	35,697	△5,137	31,952	3,745
하수도요금	21,624	30,216	△8,592	28,236	1,980
전기요금	14,183	14,552	△369	13,724	828
도시가스요금	6,233	5,828	405	5,918	△90
물이용부담금	2,760	3,233	△473	3,283	△50
오물수거료	2,544	4,944	△2,400	3,989	955
각종 회선료 및 통신료 등	5,088	5,775	△687	5,070	705
추경 감액분	102,916	118,073	△15,157	112,019	6,054

자료: 법무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법무부는 2022년 동 비목 예산액으로 2021년 대비 8.8%(9,107백만원) 증액한 1,1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2021년 집행액인 1,180억 7,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2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금액	754	912	771	1,015	830	1,059	924	1,120	1,029	1,181	1,120
부족액	△158		△244		△229		△196		△152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는 차년도 교정시설 공공요금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액의 수준과 수용인원 변동,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통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정 사업 적극 추진 필요(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사법서비스진흥기금기금의 운용 개시(2016년) 이후 매년 전체 기금 규모 대비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확대되어 2020년에는 60.9%에 이르고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민간출연금 규모는 2016년 535억 1,700만원에서 2020년 914억 4,9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17년 대비 2020년 기금 전체 집행액 대비 각 사업 집행액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국선번호인제도 운용은 최근 4년간 기금 집행 내역이 없다. 그리고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국가재정 운용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국회는 민간출연금 및 여유자금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사업 예산 99억 원을 이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 원을 예탁함으로써 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인상하고 소송구조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금의 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행률 감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치결과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 시정요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공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탁법」 제31조에서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로 ①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②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③ 조정제도의 운용, ④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⑥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금 용도 중 하나인 국선변호인제도 운용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예산 외로 운영되던 공탁출연금을 기금화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을 통해 이원적으로 집행되던 국선변호지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였고, 종래 일반회계로 지출하던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사업과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 등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하여 현재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은 통상적인 재판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법작용에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으므로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사업인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하는 경우 2022년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예산(610억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22년 계획액 1,826억원의 33.4%를 차지하고, 753억원인 기금 주요사업비 예산은 1,363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기금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공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참고인 연구비 지급 관행 개선 필요(헌법재판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참고인 연구비 지급 시 추가 조사·연구 또는 연구충실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참고인 중 법조인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다.

국회는 참고인 연구비 지급 시 추가조사·연구 및 연구충실도를 감안하여 지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판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적극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19년 참고인 연구비를 인상한 바 있고, 연구비 인상 후 내용의 충실도 등을 참작하여 추가 지급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에는 차등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111개의 학회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도에도 참고인 연구비 지급 시 연구충실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에는 연구충실도를 고려하여 참고인 연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회계연도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의 지출대장을 살펴보면, 참고인 연구비는 7월 13일에 2인, 10월 22일에 2인, 총 4인의 참고인에 대하여 연구충실도에 관계없이 의견서 제출 100만원, 변론출석 및 진술 50만원, 총 150만원이 일괄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참고인 연구비 지급내역]

(단위: 만원)

일자	성명	참고인 연구비			
		의견서 제출	변론출석 및 진술	추가 조사·연구	연구충실도
7.13.	박○○	100	50	-	-
7.13.	오○○	100	50	-	-
10.22.	제○○	100	50	-	-
10.22.	이○○	100	50	-	-

자료: 헌법재판소 지출대장 발취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충실도를 고려하지 않고 참고인 연구비를 집행한 것은 국회 결산 의결(12월 2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에는 연구충실도에 따라 참고인 연구비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고,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4. 정무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173건으로 시정 12건, 주의 63건, 제도개선 105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27건이며, 조치중 46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립묘지 봉안당 확충 사업 등 5건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	0	1	17	19	0	37	23	14
국가보훈처	0	0	1	13	21	(1)	34	23	11
공정거래위원회	0	0	4	16	11	(2)	29	27	2
금융위원회	0	0	3	7	37	(1)	46	34	12
국민권익위원회	0	0	3	7	10	(3)	17	14	3
가습기살균제 등 특별조사위원회	0	0	0	1	1	0	2	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0	0	2	6	0	8	5	3
합계	0	0	12	63	105	(7)	173	127	4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가보훈처	2	0	2
합계	2	0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립묘지 확충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국가보훈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안장하여 그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수요가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봉안당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호국원의 봉안당 확충 공사의 사전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 완료 시점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국회는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로 국립묘지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안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공사계약방식을 변경 추진하여 당초 계획(2023년 12월말)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2021년에 완료한 국립묘지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3~2027 국립묘지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가보훈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에도 국립묘지 봉안당 확충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완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안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립묘지 봉안당 확충 사업은 2021년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계획(2023년 12월말)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22년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천·임실·이천·괴산 호국원의 경우 예상 완료 시기는 2024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월 사유
영천 호국원	659	코로나19로 인한 기관협의 지연 입찰방법 변경
임실 호국원	419	
이천 호국원	10,264	

자료: 국가보훈처

[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당초 완료 계획	예상 완료 시기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
영천 호국원	2023년	2024년 9월	2022년 9월 설계완료 2022년 11월 착공
임실 호국원	2023년	2024년 9월	2022년 10월 설계 완료 2022년 12월 착공
이천 호국원	2023년	2024년 7월	2022년 7월 착공
괴산 호국원	2022년	2024년 6월	2022년 4월 착공

주: 1.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이천 호국원은 2017년에 이미 만장되었으며, 영천·임실 호국원은 2024년 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2024년까지 지연될 경우 안장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국립묘지별 안장 현황 및 만장 예상 시기]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만장 예상 시점
영천	52,530	49,317	3,213	2024년
임실	35,568	31,846	3,722	2024년
이천	50,002	50,002	0	2017년 만장
산청	10,008	8,178	1,830	2024년
괴산	20,356	15,042	5,314	2023년
제주	10,000	833	9,167	2030년 이후
합계	178,464	155,218	23,246	-

주: 1.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보훈처는 2022년 연내 2023~2027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수탁용역사업 수입예산 추계 정확도 제고(공정거래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출예산액과 자체수입예산액의 차이만큼을 정부 출연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의 경우 자체수입예산 중 수탁용역예산액을 2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입실적은 17억 5,100만원에 그쳐 9억 9,0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입결손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국회는 수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제 실적을 감안한 예산 편성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수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입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도 수탁용역 지출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수입결손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탁용역 수주 대상을 확보하여 수입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도 수탁용역 수입 예산은 여전히 지출예산액과 최근년도 수입실적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기관으로부터 수주하여 수행한 사업이 증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수주 대상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한국소비자원 예산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 지출예산액은 21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 감액되었다. 수탁용역 수입예산액은 2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300만원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지출예산액보다 1억 6,6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수탁용역 수입실적은 2017년 13억 8,300만원, 2018년 11억 2,700만원, 2019년 11억 6,200만원, 2020년 16억 6,200만원, 2021년 17억 5,100만원으로서 평균 14억 1,900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수탁용역 수입예산을 2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실제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예산액(A)	1,791	1,660	1,660	2,277	2,741	2,318
	실적(B)	1,393	1,127	1,162	1,662	1,751	-
	결손액(B-A)	△398	△533	△498	△615	△990	-
지출	예산액(C)	1,456	1,325	1,194	1,672	2,340	2,152
	집행액(D)	1,314	1,144	1,136	1,591	1,794	-
	잔액(D-C)	142	181	58	81	54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사업 수행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상적으로 위탁하는 사업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주하여 수행한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3건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수주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2021, 2022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의 공정위 사업 외 수탁사업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위탁기관	수탁과제명	수입실적
2021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	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조례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평가 연구	9
	KOICA	소비자업무 선진화 및 전문가 양성	60
2022	KOICA	우즈베키스탄 소비자업무 선진화 및 전문가 양성과정 사후관리 현장사업	-
	서울특별시	2021 서울특별시 조례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9
	외교부	APEC 디지털무역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심화 연구	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주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방안 마련 문제(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축제도로, 저축 한도가 월 20만원이 불과하여 재산형성을 위한 적정 저축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농어민들의 재산형성 효과가 크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국회 예·결산 심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의견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소관부처 조정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시정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기금 운용주체 변경 및 지원대상·조건 변경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이견 조정을 우선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 개편 등을 협의해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 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금융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본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기금존치 여부 및 실적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제도개선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을 뿐 2022년 6월말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운영되었으며 1986년 마련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사업집행 방식과 관련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이다. 농어가기금의 수입은 기타재산수입과 법정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법정부담금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며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50% 이상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¹⁾ 사실상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1:1 비중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지출은 저축장려금, 기금관리비,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지출이 저축장려금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재정이 기금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재정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1개의 지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수입이 당해연도에 대부분 지출되고 있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사실상 단년도 사업편성·집행과 유사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021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 획		결산(B)	집행률 (B/A)	구 분	계 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68,426	68,240	68,240	100.0	총 계	68,426	68,240	68,240	100.0
자체수입소계	34,138	34,124	34,124	100.0	저축장려	67,079	68,233	68,233	100.0
기타재산수입 (54-545)	26	12	12	100.0	저축장려금 (1631-301)	67,079	68,233	68,233	100.0
법정부담금 (59-593)	34,112	34,112	34,112	100.0	-	-	-	-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소계	176	4	4	100.0	기금운영비	1	-	-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6	4	4	100.0	기금관리비 (3276-201)	1	-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170	-	-	-	-	-	-	-	-
정부내부수입 소계	34,112	34,112	34,112	100.0	여유자금운용	1,346	7	7	100.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34,112	34,112	34,112	100.0	한국은행예치 (9701-970)	6	7	7	100.0
					통화금융기관 예치 (9701-971)	1,340	-	-	-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 이후 가입계좌 수 및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저축장려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1년말 기준 25.4만좌로 1조 2,952억원이 불입되었으며, 저축장려금으로는 682억원이 지급되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운영실적]

(단위: 천좌,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입계좌수	346	317	296	276	277	267	254
불입액	11,177	10,037	9,585	9,507	10,086	11,370	12,952
저축장려금	988	1,006	831	829	708	678	682
저축기관 지급금리	3.39	2.59	2.05	2.45	3.11	2.72	1.82

자료: 금융위원회

기금방식의 사업운영의 타당성과 함께 운영실적 저하 문제로 인해 동 기금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조건부 존치 의견을 받은 후 2019년·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²⁾ 또한, 국회 역시 2017·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 11월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간 제도 개편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을 뿐 2022년 6월말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사업목적, 기금 자체재원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협의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리기금 대상 기금존치평가 결과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2013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조건부존치 의견 -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연간저축한도와 저축장려 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 필요
2019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현가입자의 만기를 고려한 일몰 후 폐지 권고 - 농어가 저소득자의 저축장려, 재산형성 및 소득확대를 위한 최초 기금설치의 목적에 비추어, 경제·금융환경 변화로 운영의 실효성이 낮고,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
2022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현가입자의 만기를 고려한 일몰 후 폐지 권고 - 본 기금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

자료: 해당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의 납부 독려 필요(국민권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금 반환 등으로 구성된다. 2020회계연도 보상금 상환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은 3억 9,900만원으로 3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2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납부기한을 초과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19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에서 지적된 상황이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에도 보상금 상환 지연이 반복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81.9%만 수납되었으며, 보상금 상환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상환결정액의 60%만 수납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 이행을 독려하는 등 상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부패신고 보상금의 법정 상환기간 내 (3개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상환금 예산을 202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17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 요청액 납부 독려 관련 출장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여 상환금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에도 지자체 보상금 상환금 관련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금이 법정기한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 상환에 따른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은 3억 6,900만원이나 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7,2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본예산	추경(A)						(C/A)	(C/B)
2019	1,098	1,098	1,098	939	887	52	0	80.8	94.5
2020	399	399	399	343	281	62	0	70.4	81.9
2021	369	369	369	765	393	372	0	106.6	5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예산 확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증가로 보상금 상환액 또한 증가하여 보상금 상환 지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상환 당초 계획액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 구성 요소 중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에 대해서만 3년 연속 예산 대비 보상금 상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보상금 상환 예산 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연도	예산 (A)	집행 (B)	차이 (B-A)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2019	355	119	△236
	2020	349	215	△134
	2021	170	55	△115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상환	2019	-	-	-
	2020	30	9	△21
	2021	180	303	123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019	5	7	2
	2020	4	26	22
	2021	14	28	14
기타 과오지급금 반환	2019	10	32	22
	2020	16	31	15
	2021	25	7	△1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연구용역 관리 문제(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사업은 세월호참사에서 구조구난의 적정성,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사업이다. 2020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연구용역사업의 예산현액 35억 9,600만원 중 17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실효행률이 49.5%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용역계획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2022년 연구용역사업을 2022. 1. 10. 일자로 발주완료 후 5월 중으로 완료 예정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1월 중으로 발주가 완료되었으나,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2021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실효행률이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사업 연구용역비는 3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4,500만원과 예비비 30억 9,000만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중 6억 3,600만원만이 연내 집행되었으며, 21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6억 8,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업담당자는 용역계획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기획재정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153건으로 징계 1건, 시정 5건, 주의 45건, 제도개선 103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32건이며, 조치중 21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5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0	0	1	17	68	0	86	71	15
국세청	0	0	1	17	10	(1)	27	26	1
관세청	0	1	0	5	6	0	12	8	4
조달청	0	0	2	5	7	0	14	14	0
통계청	0	0	1	1	12	0	14	13	1
합계	0	1	5	45	103	(1)	153	132	2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2	2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통일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비공개 문제(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동 사업 정책연구용역은 매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과제의 과제명 및 연구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결산심의 기능 확보 및 통일부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연구과제명 및 연구자 등은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의 과제명과 연구자명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특성상 연구내용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용역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매년 공개 가능한 연구를 지속 발굴해 연구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명과 결과보고서를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건 내외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아 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2021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도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물론이고 과제명도 비공개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명과 결과를 비공개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국회는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필요성 및 성과, 부처별 정책연구용역 사업 및 과제의 중복가능성,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충실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사회현안과 재정제도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러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의정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원칙,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기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명 및 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연구용역 공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0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은 당초 18조 9,055억 7,500만원에서 17조 7,554억 3,9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중 17조 2,73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1,700만원은 불용되었다. 연례적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안을 과대 편성한 후 예산 심의시 삭감되고 이후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이자율 산정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에 일부 가산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는 의무지출로서 다소 보수적 편성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2022년 이자액은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 편성 하였으며,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자체 변경은 '21년에 '의무적' 성격의 지출 소요 (타 회계·기금 예수원금상환)의 예기치 못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회 자체변경한 것으로 언급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에 예산대비 결산규모의 대규모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타기금으로 전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계획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은 당초 20조 2,100억 9,600만원이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804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고채 원금상환(조기상환)을 2조원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 감액으로 2,519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변경을 통해 타 회계·기금에 대한 예수원금상환 증액을 위해 예산부족분 8,900억 원을 감액하여 18조 8,877억 7,3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 이중 18조 2,25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6,621억 5,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년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1조 9,544억 8,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8,900억원은 타 회계·기금에 대한 예수원금상환 증액을 위해 자체변경을 통해 사용되었다.

[연도별 국고채 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안(A)	예산(B)	결산(C)	차이(A-B)	차이(B-C)	집행률
2014	20,485,775	19,024,501	18,020,449	1,461,274	1,004,052	94.7
2015	20,740,728	18,872,854	18,255,731	1,867,874	617,123	96.3
2016	20,516,150	18,832,653	17,961,410	1,683,497	871,243	95.4
2017	18,832,819	18,141,598	17,197,102	691,221	944,496	94.8
2018	18,522,454	17,822,466	17,305,696	699,988	516,770	97.1
2019	19,052,735	18,152,502	16,698,028	900,233	1,454,474	92.0
2020	19,855,575	18,905,575	17,273,739	950,000	1,631,836	91.4
2021	21,110,096	20,210,096	18,255,615	900,000	1,954,481	90.3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완충(buffer)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연례적으로 계획안을 과대 편성한 후 예산 심의시 삭감 후에도 대규모 차이가 발생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도 집행 시 예산대비 결산에서 대규모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 문제(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세채납건의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안내문 발송,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액 납부 촉구 등 단순 사실행위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수단이 미비하며, 특히 고액체납 건에 대한 징수율이 더욱 저조한 실정이었다.

국회는 체납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체납 건은 직접 징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정리보류한 체납 건만을 위탁하는 등 징수위탁 체계 개편 및 국세청 체납분야 조직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체납분야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청 체납 추적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무서에 지방청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추적 업무만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신설하여 일부 세무서에 시범실시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전담인력도 증원(5명)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세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전담인력 증원 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위탁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징수위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위탁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2020년보다 향상되어 징수율이 0.65%에서 0.69%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징수가 저조한 상황이며, 위탁건수 기준으로는 2020년보다 2021년 위탁건수가 24.4%(42만 3,603건 → 52만 7,081건)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은 7.3%에서 6.0%로 하락하였다. 특히 체납금액별 징수위탁 실적을 보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건의 금액기준 징수율 및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체납 건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대비 모두 낮아졌다.

[징수위탁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건, %)

연 도	연도말 위탁금액	연도말 위탁건수	징수금액 (당년)	징수건수 (당년)	징수율 (연도말기준)	
					금액기준	건수기준
2017	58,293	560,840	378	28,397	0.65	5.1
2018	61,275	529,918	390	31,034	0.64	5.9
2019	63,408	504,484	429	32,330	0.68	6.4
2020	61,471	423,603	397	30,871	0.65	7.3
2021	63,267	527,081	435	31,384	0.69	6.0

자료: 국세청

[체납금액별 징수위탁 실적]

(단위: 억원, 건, %)

구분		연도말 위탁금액	연도말 위탁건수	징수금액 (당년)	징수건수 (당년)	징수율 (연도말기준)	
						금액	건수
2020년	1천만원 미만	1,239	48,980	58	7,008	4.7	14.3
	1천만원~1억원	23,037	251,133	283	22,304	1.2	8.9
	1억원~5억원	37,195	123,490	56	1,559	0.2	1.3
	5억원 초과	-	-	-	-	0.0	0.0
	계	61,471	423,603	397	30,871	0.6	7.3
2021년	1천만원 미만	1,404	57,972	72	9,045	5.1	15.6
	1천만원~1억원	29,662	348,285	305	20,979	1.0	6.0
	1억원~5억원	32,201	120,824	59	1,360	0.2	1.1
	5억원 초과	-	-	-	-	0.0	0.0
	계	63,267	527,081	435	31,384	0.7	6.0

자료: 국세청

즉, 체납분야 정원 증원 등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징수위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나라장터 통합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 필요(조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축 사업은 장기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한편, 28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운영 중인 조달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조달청은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이용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통합이 늦어지게 되었다.

국회는 조달청이 각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 여부를 논의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통합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협의, 통합 추진의 과정으로 보고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ISP, ISMP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대상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조달청의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6개 기관에 대한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조달시스템의 운영 근거가 있음을 주장 중인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통합 여부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전력공사와 국가철도공단도 통합을 거부하고 있어 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현재 나라장터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의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장터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의 거부 사유]

거부기관명	거부 사유
한국전력공사	- 기 투자비용 매몰, 새로운 이용수수료 발생 등 비용상 문제
국가철도공단	- 계약에 적용되는 고유한 계약기준이 많고, 이들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 수정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한국환경공단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방위사업청	- 국가보안 유지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 운영 필요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자체, 교육부, 농림부, 식약처 등 광범위한 주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 수행 중에 있어 통합 곤란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	- 통합될 경우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문제, 동 시스템 운영의 수탁기관인 '더케이교직원나라'의 인력 승계 문제 등이 발생하여 통합 곤란 - 법령에 따른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있음

자료: 각 기관의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통합을 거부한 6개 기관의 입장에 대해, 조달청은 통합(이용전환)의 효과와 장점 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1단계(분석·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22.7.) 2단계(시스템 개발)로 이행되는 중임에도 아직 통합 대상 기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달청은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히 통합 대상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되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이 처한 상황,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에 따른 득실도 함께 고려하여 신속히 통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5) 통계조사원 중도포기 과다 개선 문제(통계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은 22,583명이었는데, 이 중 중도포기자는 4,109명으로 중도포기 비율(18.2%)이 다른 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도포기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농림어업총조사의 중도포기 비율(7.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

통계조사원이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 통계조사원을 다시 고용하고 재교육을 하는 등 행정비용이 늘어나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국회는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계조사원의 과도한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원 채용 및 중도포기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채용, 교육, 조사 등 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계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통합조사에서 통계조사요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급조사원의 중도 포기자 수 및 추가모집 수가 증가하였는바, 2020년에 발생하였던 통계조사원의 중도 포기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프랜차이즈 조사 등을 같은 시기에 방문조사(One-stop Survey)함으로써 조사 효율성 및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요원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총조사 실시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경제통계조사의 경험이 많은 조사원을 확보하는 등의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2021년 경제통계통합조사의 도급조사원 중도포기 비율은 19.7%로 다른 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도급조사원 모집 및 중도포기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모집예정 인원(A)	실제모집 인원(B)	중도포기 인원 수(C)	중도포기율 (C/B)	추가모집 인원 수
2019	경제통계통 합조사	3,046	3,013	242	8.0	63
	전체 조사	11,497	11,415	553	4.8	280
2020	경제통계통 합조사	1,840	1,798	193	10.7	67
	전체 조사	8,806	8,707	390	4.5	226
2021	경제통계통 합조사	930	824	162	19.7	210
	전체 조사	11,001	10,866	366	3.4	295

주: 전체 조사의 경우 도급조사원 모집 없는 조사, 시험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을 주관한 조사는 제외되었음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도급조사원을 비롯한 통계조사원의 중도포기 문제는 특정 통계조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통계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행하는 통계조사의 인력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교육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33건으로 시정 6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4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26건이며, 조치중 7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1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0	0	6	4	24	(1)	33	26	7
합계	0	0	6	4	24	(1)	33	26	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위탁 법적근거 마련 필요(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교육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위탁하여 수행 중인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 수행기관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고유업무로 추진하는 한국장학재단에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을 통합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행기관의 타당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21.7.30) 발의를 통해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이고, '21.11월 현재 해당 법안 국회(상임위) 계류 중이며 조치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학자금 지원을 고유 업무로 추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0년도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모두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4151) 내 4개 세부사업(총 979억 5,000만원) 모두 한국장학재단에 교부하였다.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단위사업, 4151)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사업코드)	사업 시작연도	사업 추진방식	위탁기관	2019 예산	2020 예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4151-300)	2018	민간경상보조 100%	한국장학 재단	78,000	110,70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4151-301)	2020			0	1,800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4151-302)				0	20,500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4151-304)				0	1,750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0년 1월 15일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다. 주요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으로 통합 공모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0년 3월 ~ 2023년 2월(3년)로 하여 위탁기관은 지정일 이후 3년간 수행을 원칙(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계속 여부 검토)으로 하였다. 사업 규모는 4개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 1,347억 5,000만원을 보조사업자(전담기관)에 사업비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첨부자료에 최근 3년간 학생(초중등·대학생) 대상 재정지원 사업 실적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기관 모집 공고 주요 내용]

o 사업개요

1. 사업명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수행 세부 사업 : ①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②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③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④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3. 사업 기간 및 규모

(사업 기간) 2020년 3월 ~ 2023년 2월(3년간)

※ 위탁기관은 지정일 이후 3년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계속 여부 검토

(사업 규모) 국고 134,750백만원

※ 보조사업자(전담기관)에 사업비 총액으로 지원

○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및 임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조직 구성
-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별 시스템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보
-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 사전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 종합매뉴얼(교육청(학교)용, 학생용) 개발·보급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사후관리
- 국고보조금 정산 및 보고
- 그 외 현장실습 및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부 요청사항 등

○ 사업 수행기관 자격요건 등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첨부자료

기관 소개서,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최근 3년간 학생(초·중·고·대학생) 대상 재정지원 사업 실적 등

자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1)에 따라 대학생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 및 관련사업을 고유업무로 추진하는 출연 기관²⁾이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이 고졸 취업지원 관련 4개 세부사업을 모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장려금 지원, 현장실습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21.7.30) 발의를 통해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이고, '21.11월 현재 해당 법안 국회(상임위) 계류 중이며 조치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보고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장려금 지원과 현장실습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고졸 취업지원 관련 4개 세부사업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74건으로 시정 13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49건이며, 이 중 4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62건이며, 조치중 12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2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11	12	32	(4)	51	44	7
방송통신위원회	0	0	2	2	9	0	13	10	3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2	8	0	10	8	2
합계	0	0	13	16	49	(4)	74	62	1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지속 관리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은 4차례 사업 계획 변경과정에서 기술개발 내용과 목표 변경, 실행 부진 등이 발생하였다. 2011년 착수 이후 2021년 5월까지 4차례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고에너지구간 기술력 미확보로 주요 마일스톤 및 장치구축 관리지표를 변경하였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행률은 평균 48.4%였다.

이에 국회는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 예산 전문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2021년 예산집행 현황과 2022년 예산집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재수립된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조치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의 실행률은 45.0%로 전년(39.0%)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으나, 이월액은 986억원으로 전년(915억원) 대비 증가하여 지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은 2021년 ‘일괄구축’에서 ‘단계구축’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한 이후에도 1단계 실험장치의 구축 및 시운전 일정이 다시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치구축 관리지표 7개 중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저에너지구간 SI 빔인출’이 10개월 지연되어 2022년 10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저에너지구간 RI 빔인출’ 역시 2023년 1월까지 완료하려던 계획을 2023년 10월로 변경하였다.

[장치별 주요 마일스톤 및 관리지표 변경]

구분	항목	당초	변경 (‘21.5.)	변경 (‘21.12.)	비고
장치구축 관리지표 (7개)	SCL Demo 빔인출	2017.12.	2017.12.	좌동	완료(2017.12.)
	저에너지구간(SCL3) 설치 시작	2019.05.	2020.04.	좌동	설치완료(2021.12.)
	고에너지구간(SCL2) 설치 시작	2020.10.	마정	마정	2단계 사업계획 연체
	저에너지구간(SCL3) SI 빔인출	2020.12.	2021.12.	2022.10.	
	저에너지구간(SCL3) RI 빔인출	2021.09.	2023.01.	2023.10.	(ISOL연계)
	고에너지구간(SCL2) 빔인출	2021.12.	마정	마정	2단계 사업계획 확정 후 일정 수립
	고에너지구간(SCL2) 목표수준 빔인출	2022.09.	마정	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에도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연구개발 기관(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집행실적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1억 3,900만원에 부처 교부액 796억 6,200만원을 합한 1,718억 100만원이었으나, 이 중 732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0%로 전년(39.0%)에 비해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985억 8,800만원으로 전년(915억 4,700만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도별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부처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이자발생	실집행률 (B/A)
2020	98,720	98,720	51,432	150,152	58,605	91,547	592	39.0
2021	79,662	79,662	92,139	171,801	73,213	98,588	283	45.0
2022.5.	0	0	98,871	98,871	15,155	-	-	15.3

주: 예산액의 경우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전년도 이월액에는 이자수입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의 실 집행률은 45.0%로 전년(39.0%)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으나, 이월액은 986억원으로 전년(915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은 우편물 운송, 우체국소포 배달, 물류센터 운영, 국제우편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2019년 ~2020년 2개년에 걸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았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는 ①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개선을 위한 우본·지원단 공동 TF 운영, ② 월 단위로 평가지표별 실적관리를 통해 부진지표에 대한 대책 마련, 경영평가 점수향상을 위한 컨설팅, 타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경영개선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산업진흥 유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¹⁾에 따라 매해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 평가를 받은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으로 발표되었다.²⁾³⁾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최근 5년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D 등급을 제외하고 2017년, 2019년~2021년 4차례 E등급 평가를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미흡(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음에 따라 매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2019~2020회계연도에 걸쳐 결산 심사시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E등급	D등급	E등급	E등급	E등급

자료: 기획재정부, 2017~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매해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실적 개선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또한 ①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개선을 위한 우본·지원단 공동 TF 운영, ② 월 단위로 평가지표별 실적관리를 통해 부진지표에 대한 대책 마련, 경영평가 점수향상을 위한 컨설팅, 타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사업에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고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2.6.20.

3) 평가 결과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관장 해임건의 인사조치 대상이나 2021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9년~2020년과 같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도 기관의 경상경비가 삭감될 예정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실적 개선 관련 국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조치결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인사 조직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17회계연도)	○ (경영평가 미흡요소 제거) 총액인건비 인상률 관리 강화, 채용프로세스 정부가이드 준수, 경영평가 한계지표 개선 ○ (경영개선 활동을 위한 성과향상) 기획재정부 경영컨설팅 시행, 경영성과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결과 보고 ○ (지표별 중점추진 과제 발굴 및 관리) 경영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및 추진과제 발굴, 지표별 중점추진과제 스코어카드 상시 관리 ○ (경영관리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운송분야와 차량분야의 통폐합, 경영지원실 혁신문화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2017년도에 이어 또다시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만큼 더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필요 (2019회계연도)	○ 신임 기관장 취임(2020.4.1.) 후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영실적평가 부진지표 개선에도 노력하였음 * 3월 11팀 체계를 유지하되 안전노무팀 신설, 혁신문화팀 폐지 ○ 향후에도 노사공동 총인건비 준수 TF 운영, 경영평가지표 점검회의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경영개선에 노력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2년 연속 기관 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았으므로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2020회계연도)	○ 물류지원단 경영대선 대책 마련 및 이행 완료 -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개선을 위해 우본·지원단 공동 TF운영('21.9.14~12.31.) - 월 단위로 평가지표별 실적 관리를 하여 부진지표에 대한 대책 마련, 경영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컨설팅, 타 기관 벤치마킹 등 실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이와 같이 우체국물류지원단이 2017년도 이후 매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영실적 부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차원에서 지원·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외교통일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86건으로 시정 8건, 주의 23건, 제도개선 56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0건이며,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등 3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0	0	4	16	26	(1)	45	41	4
통일부	0	0	2	7	24	0	33	22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	0	2	0	6	0	8	7	1
합계	0	0	8	23	56	(1)	86	70	1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통일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공외교전략 수립 필요(외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 보면, 2021년 예산현액 240억 6,500만원 중 143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9.7% 수준이며, 동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행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¹⁾

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내역사업 대부분의 집행이 부진한 한편, 시행기관 간 유사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시행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외교 중복 해소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정책·문화·지식을 포괄한 뉴미디어 기반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새롭게 채택한 공공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공공외교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행기간 간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고 효과성 제고를 도모해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외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대상국의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중 거점공관 운영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은 거점공관을 선정하여 사업구상 및 실행단계에서 주변공관들과 협업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 다만, 대면 교류를 포함하는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18년 93.5%, 2019년 98.1%, 2020년 55.4%, 2021년 59.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2021년 동 사업의 예산편성 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을 거점공관 대상지역으로 계획하였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지역의 담당관 회의 취소 및 화상회의 대체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액은 2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7억 5,000만원 대비 32.5%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거점공관 운영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9	60	25	41.7
2020	695	152	21.9
2021	750	244	32.5

주: 1. 2020년도에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9년도에 거점공관 지역이 1개(미국) 지역이었으나 2020년도에 4개 지역으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거점 지역내 여타 공관과 공유 및 교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대면 교류가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계획과 집행 간 차이는 인정되나, 호놀룰루 및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대상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 청취 등을 통해 지역별 사업여건은 사업계획 시 예산액 계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점공관 운영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부진 사유
미국(대)	40	83	-
호놀룰루(총) ¹⁾	-	57	-
중국(대) ²⁾	116	5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동 및 집합 활동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여 각종 공공외교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델타 변이 확산 및 당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계획변경 불가피
일본(대)	17	8.3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다대하여 정책공공외교 활동 수행 불가
러시아(대)	41.3	21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 세미나를 화상 세미나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는바,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 반납 및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취소

국가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부진 사유
상트(총)	15	15	-
블라디(총)	23	55	-
이르쿠츠크(총)	14	-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현지 기관 및 지방정부 우려 등으로 당초 계획한 '남북러 협력 세미나' 취소
하반기 집행을 위한 배정 유보	484	-	하반기 지역별 담당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1월 오미크론 발생으로 방역 당국 지침(해외입국자 10일 격리 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회의 취소
계	750	244	

주: 1) 당초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유보하였던 4억 8,400만원 중 일부를 호놀룰루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동맹 세미나'에 추가 배정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임

2) 당초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에서 미·중·일·러 4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비중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국에 거점 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배정하였기 때문임

자료: 외교부

일례로 중국 대사관은 당초 1억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당국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러시아 대사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대면 세미나를 화상 세미나로 변경·개최하여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을 반납하고 기타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다.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현지 기관 및 지방정부의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전면 미시행되었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대상국가의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정착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62.1% → 2020년 60.1%), 고용률(2019년 58.2% → 2020년 54.4%), 실업률(2019년 6.3% → 2020년 9.4%) 모두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8년 주거지원금 인상(1,300만원 → 1,600만원), 2019년 정착기본금 인상(700만원 → 800만원)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물가상승 및 생활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아 변동이 전혀 없었다.

국회는 물가변동 및 일반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정착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1년 1월 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고령,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산금 및 취업 장려금의 금액을 증액하였고, 향후 물가변동, 일반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 등을 정착금액 결정의 고려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5년)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가산금이 지급되는 점, 각 가산금의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정착금과 별도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가산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생계유지 곤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가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 지급사유별 신청서류 검토만을 통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5종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로금²⁾을 지급받거나 전문 기술이 있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5종의 가산금 지급사

유는 각각 장애등급 판정, 3개월 이상 장기치료, 자녀양육, 한부모아동보호, 고령 등으로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중복지급에 대한 여지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가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가산금 등 5종의 가산금 집행액이 8억 8,300만원으로 가산금을 사유별로 지급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가산금 사유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자녀양육 가산금	고령가산금	한부모아동보호 가산금	합계
88	20	496	194	85	883

주: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고령가산금,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은 통일부(하나원)이 집행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가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후 일정기간 내 생계곤란한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가산금이 지원되는 점, 5종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여러 가지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정착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잔여사업 신속추진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거래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되어 2014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두 차례 개정(2013년, 2018년)을 통해 법정기한이 2022년 4월까지 연장되었다.

2016년 이후 남북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기간 동안 집필원고 교정·교열 등 남측 단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으나, 올림말 30만 7,000개 중 약 60%에 해당하는 18만 2,000개에 대한 남북 합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거래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2022년 4월 법정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는

2) 보로금은 제공한 정보의 대가로 5억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데 2021년에는 5명에게 총 4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다.

점 등을 고려하여 편찬사업의 잔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으로 편찬사업회의 법적 존속기한이 6년 연장(2022년 4월 → 2028년 4월)되었고, 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국회 의결 취지를 존중하여, 종이사전 완간, 전자사전 및 전문용어사전 편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제본 전달 등 북측 호응을 촉구하고, 우리측 단독으로 교정·교열, 삽화 구축 등 내부준비에 만전, 신속하게 종이사전을 완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조치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2022년 4월에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2016년 이후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³⁾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 편찬 완료 후에 증보·개정사업 및 전자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 12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개정되어 편찬사업회의 존속기한이 6년 연장되었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28년 4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보이므로 통일부는 사업추진 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진척률]

(단위: 회,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공동회의	4	4	4	0	0	0	0	2	3	0	0	0	0	0	0
진척률	25.0	39.0	53.0	56.7	63.0	65.0	66.2	69.2	73.3	75.1	78.0	78.5	78.7	81.1	81.1

자료: 통일부

3) 통일부는 2021년말 기준 사업 진척률이 81.1%로 전년과 동일한 이유에 대해 표기된 진척률은 종이사전 진척률로, 사실상 우리측 단독으로 사전발간을 위한 준비작업은 90% 이상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9. 국방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99건으로 시정 36건, 주의 27건, 제도개선 42건이며, 이 중 6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5건이며, 조치중 24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진료지원 사업 등 2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0	0	22	10	20	(2)	50	38	12
병무청	0	0	0	1	9	0	10	8	2
방위사업청	0	0	14	16	10	(4)	36	27	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0	0	0	0	3	0	3	2	1
합계	0	0	36	27	42	(6)	99	75	2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군외상센터의 차질없는 개원 대책 마련 필요(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군외상센터가 당초 2019년에 개원되었어야 하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질없는 개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해제로 2022년 4월 20일에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였고 개소 후 군 환자를 우선으로 외상진료를 실시하되, 향후 환자군을 확대하여 민간환자까지 외상진료를 지원한다는 예정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방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 외상 외과 전문의 인력확충을 통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민간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군 내 외상전문의의 부족으로 민간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A대학교 병원과 2012년부터 협약(MOU)을 체결한 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였으나 위탁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국군외상센터 건립 진행 과정]

2011년 10월 5일 :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계획 수립
2013년 10월 : 국군외상센터 설립 계획보고(150병상/1,000억원)
2016년 4월 : 국군외상센터 설립 계획 수정보고(60병상, 497억원)
2017년 12월 26일 : 국군외상센터 시설공사 설계 완료/계약 체결
2020년 3월 5일 : 국군외상센터 준공
2020년 9월 7일 ~ 2021년 5월 30일 : 1차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
2021.8.23. ~ 2022. 4.18. : 2차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
2022년 4월 20일 : 국군외상센터 개소

자료: 국방부

이후 국방부는 2022년 4월에 B대학교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민간 외상 전문의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나 2022년 7월 현재까지 근무조건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였으나 민간 외상 외과 전문의를 확충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군 내 의료인력을 통한 진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군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 외상 외과 전문의 확충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대체역심사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병무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신규신청 인원을 매년 500여건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 2020회계연도 결산 시 심사 중인 안건이 700여건을 넘기고 있어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 병무청에 대해 대체역 편입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심사지연을 해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병무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병무청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심사지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 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편을 통하여 심사지연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전후를 비교해보면 2020년도(개편 전)의 경우 사전심사는 월 10회 회당 6명을, 전원회의는 월 2회 회당 30명을 심사하였고, 2021년도(개편 후)의 경우 사전심사는 월 12회 회당 7~8명을, 전원회의는 월 3회 회당 30~40명을 심사하게 되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전후 비교]

구 분	2020년	2021년
사전심사	월 10회(회당 6명)	월 12회(회당 7~8명)
전원회의	월 2회(회당 30명)	월 3회(회당 30~40명)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다음과 같은 심사현황을 제시하였는데, 연도말 기준에 의하면 2020년도의 경우 대체역 편입신청 1,962건을 접수받아 완료는 731건, 철회 16건, 심사대기 1,215건이며, 2021년도의 경우 2020년도 심사대기 1,215건이 이월되고 대체역 편입신청 574건을 접수받아 완료는 1,297건, 철회 24건, 심사대기 468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자료에 따르면 심사대기 건수는 1,215건에서 46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역 심사현황(연도말 누계기준)]

(단위: 건)

연도	전년도이월	접수	완료	철회	심사대기
'20년	-	1,962	731	16	1,215
'21년	1,215	574	1,297	24	468

자료: 병무청

그러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12.31. 법률 제 16851호) 제2조¹⁾의 적용을 받는 무죄판결 확정자의 경우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짧기 때문에, 심사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접수를 제외하고 무죄 이외자의 심사현황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편입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무죄 이외자 편입신청의 심사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결정기간이 연장된 건은 신청 건 1,206건 중 438건²⁾(36.3%)이며 2021년도의 경우 결정기간이 연장된 건은 신청 건 471건 중 445건³⁾(94.5%)으로 나타나 2021년도의 경우에 연장의결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무죄 이외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심사기간별 현황]

(단위: 건)

신청연도	신청 건수	심사 제외	심사 완료			심사 진행 중		
			결정기간 이내	연장포함 결정기간 이내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결정기간 이내	연장포함 결정기간 이내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합 계	1,677	39	755	538	109	-	5	231
2020	1,206	23	745	416	22	-	-	-
2021	471	16	10	122	87	-	5	231

주: 1. 심사 진행 중 여부는 2022년 4월말 기준

2. 심사 제외는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인이 사망한 건

자료: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심사지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무죄 이외자의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신청 건의 경우보다 2021년도 신청 건의 경우에 연장 없이 결정기간 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줄었으며 법정기간 미준수하는 경우도 2020년도 신청 건 중 22건 심사에서 2021년도 신청 건 중 31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심사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2) 연장 포함 결정기간 이내 심사 완료 건 416건 +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완료 건 22건
- 3) 연장 포함 결정기간 이내 심사 완료 건 122건 +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완료 건 87건 + 연장 포함 결정기간 이내 심사 진행 중 건 5건 +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진행 중 건 231건
- 4)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역법」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4조의 적용으로 2021.6.30. 대체역 편입신청 건부터 법정기간이 최대 360일에서 최대 150일로 단축된 데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10. 행정안전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157건으로 징계 1건, 시정 6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116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32건이며, 조치중 25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 사업 등 2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0	0	1	13	47	(2)	59	50	9
경찰청	0	0	4	15	27	0	46	40	6
소방청	0	0	0	3	14	0	17	14	3
인사혁신처	0	0	0	3	15	(2)	16	1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1	1	7	12	(3)	18	13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	0	0	0	1	0	1	1	0
합계	0	1	6	41	116	(7)	157	132	2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0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4.4%,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5.5%,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5.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회는 향후 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 사업에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각 시스템의 2020년 예산의 실집행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공동이용 시스템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2021년에도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시스템 중 서울시 연계 부문의 경우 2022년 7월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자치단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73%인 반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각각 4.2%, 4.3%로 나타났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2021년 2개 시스템의 사업 대상에 서울시가 추가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 협이가 필요하였고, 계약 유찰 등으로 인하여 12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유찰 등으로 인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서울시 연계 부분은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해당 연계 시스템

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및 지방세입 관련 업무를 차세대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¹⁾ 시행일(2023.1.25.) 이후인 2024년에야 개통될 예정이다. 연계 시스템이 개통되기까지는 당초 차세대시스템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전국 납세자 정보의 단일화, 지방자치단체 간 납세정보 연계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중 서울시 연계 부분에 대한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집행을 추이를 반영한 보조금 교부 필요 등(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 반납 인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집행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반납인원 미달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

1)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쟁송, 범죄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⑦ (생략)

는 등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이 과소 또는 과다 교부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국회는 지자체별 목표인원 대비 자진반납 인원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자체별 실제 소요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이 과소 또는 과다 교부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경찰청은 2021년 매월 지방자치단체별 실행행률을 파악하고, 2차 보조금 교부 시 집행률, 반납추세, 지자체 의사 등을 반영하여 교부금을 재조정하여 교부하였으며, 2022년 사업부터는 3차 교부를 실시하여 지자체별 실제 소요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경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편성 관련 사전 협의가 미흡하였고, 지자체별 실행률 격차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청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2021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96.2%로 양호한 수준이나, 충청북도 보은군·충청남도 청양시·경상남도 거창군 등은 집행률이 0%로 나타나고, 강원도 등은 실행행률이 80% 이하로 나타는 등 지자체별 실행행률 격차가 있었다.

2021년 동 사업의 지자체별 실행행률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① 경찰청의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였고, ② 국고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집행률, 반납추세 등을 교부금액의 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전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수요를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러한 사전 협의를 미흡하게 하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2차 국고보조금 교부 전인 5월말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7개 지방자치단체 중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률이 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2021년 국고보조금을 3월과 6월에 나누어 2차례 교부하였으나, 기존 집행률이 0%인 18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별다른 조정 없이 교부하는 등 2차 교부금액 조정 시 집행률, 반납추세 등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수요 및 예산에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률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69건으로 시정 35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23건이며, 이 중 4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64건이며, 조치중 5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기금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등 2건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0	0	28	12	16	(4)	52	48	4
문화재청	0	0	7	3	7	0	17	16	1
합계	0	0	35	15	23	(4)	69	64	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재청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도에 당초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신규 추진한 테마10선 체류관광 활성화 사업과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은 실집행률이 각각 51.2%, 46.1%로 저조하였다.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요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 사업의 경우 기금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기금변경 사업은 적정예산 편성과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연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년 기금 자체변경으로 신규 추진한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 자체변경으로 인한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변경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에 기금 자체변경으로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과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두 사업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기관의 실집행 실적은 저조하다.

먼저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은 중소여행사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4월 기금 자체변경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2021년 동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한 수정계획액 30억원 중 보조사업자인 한국여행업협회는 3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10.9% 수준이다.

다음으로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은 유원시설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또는 외주 방역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금 자체변경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2021년 동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계획액 80억 6,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집행실적이 없다.

기금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은 당초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편성된 경우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변경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문화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문화재청은 2020년 결산 결과 6개 세부사업(7개 내역사업)에서 실집행이 22.2%~69.7%로 매우 저조함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국회는 실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2021년 및 2022년 예산 편성시, 실집행 저조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이행하였고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재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중 드론 스테이션 구축과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문화재청은 두 사업에서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기관의 실집행 실적은 저조하다.

먼저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중 드론 스테이션 구축은 드론을 도입하여 평상시 정보수집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동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예산액 1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9개 지자체는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4.7% 수준이다.

다음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외관을 정비하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동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예산액 32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3개 지자체는 12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9.6%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85건으로 시정 6건, 주의 53건, 제도개선 128건이며, 이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67건이며, 조치중 18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사업 등 4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0	0	0	5	61	0	66	54	12
농촌진흥청	0	0	1	4	12	0	17	16	1
산림청	0	0	1	8	15	(2)	22	22	0
해양수산부	0	0	4	26	34	0	64	60	4
해양경찰청	0	0	0	10	6	0	16	15	1
합계	0	0	6	53	128	(2)	185	167	1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사업의 집행저조 문제(농촌진흥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 사업은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 약제효과 등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환경위해 3등급(BL-3)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기준 보완을 위한 고시 개정으로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2020년 10억 2,800만원의 예산 중 7억 7,4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23.2%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농촌진흥청에 사업의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등 추가적인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21년 9월 9일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비 집행을 완료하였고, 설계완료 즉시 긴급 조달계약(공사)을 추진하는 등 행정처리절차 최소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련 부처(과기부, 조달청, 기재부)와 긴밀한 협조 및 철저한 공사관리로 공기 내 건축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촌진흥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고위험식물병해충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 사업은 2021회계연도 집행실적이 24.0%로 저조하고,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건설비 예산 91억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68억원을 감액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차질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BL-3 구축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설계비 10억 2,800만원 중 2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23.2%의 집행률을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공사비 235억 1,600만원 중 63.3%인 148억 7,700만원을 공사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37억 9,900만원만 집행하고 116억 700만원이 이월, 3억 8,500만원은 불용되어 24.0%의 집행률을 보였다.

[고위험식물병해충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사업의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예산	집행	이월	불용	예산	집행	이월	불용
합계	25,984	1,028	238	774	16	15,832	3,799	11,607	385
1. 공사비	23,516	-	-	-	-	14,877	3,120	11,372	385
2. 시설부대경비	2,468	1,028	238	774	16	955	679	275	-
○설계비	1,028	1,028	238	774	16	-	-	-	-
○감리비	1,386	-	-	-	-	915	640	275	-
○시설부대비(관리비)	54	-	-	-	-	40	39	1	-

자료: 농촌진흥청

2021년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에 대한 과기부,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이에 따른 기재부와의 사업 규모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설계용역을 정지시켰고, 6월에 과기부, 8월에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8월에 기재부와의 사업규모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1년 9월에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2021년 12월 이 되어서야 시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져, 선수금을 제외한 공사비가 이월되었다.

[고위험식물병해충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 사업 설계용역 관련]

구분	일시	비고
설계계약체결	2020.4.27.	용역기간: '20.4.27.~'20.10.23.
일시정지통지(1차)	2020.9.10.	설비기준 보완을 위한 고시개정 필요
재개통지	2020.12.21	용역기간 변경: '20.4.27~'21.2.3.
일시정지통지(2차)	2021.1.21.	과기부, 조달청, 기재부 등과의 협의 필요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2년 1월 연구동 기초공사 중 다량의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 우려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등 2022년에 편성된 건설비 예산 91억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68억원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되었으며, 총 사업기간도 기존 3년(2020~2022)에서 1년이 연장되는(2020~2023) 등 전반적인 사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별 당초에 세운 계획 일정과 실제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이 비교되어, 지속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BL-3 구축 사업의 당초 공정계획과 실제 추진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기본계획 수립		‘19.12월	‘19.12월(1개월)
부지 선정		‘19.12월	‘19.12월
공공건축 사전검토		‘20.1월	‘20.1~2월
실시설계 용역	계획설계	‘20.6월	‘20.8~‘21.3월
	중간설계	‘20.8월	‘21.3~‘21.6월
	실시설계	‘20.12월	‘21.6~‘21.8월
공사 착공		‘21.3월	‘21.12월
공사 중지 ¹⁾		-	‘22.1~‘22.5월
공사 재개		-	‘22.6~‘22.11월
1차공사 완공		‘21.12월	‘22.11월
2차공사 완공		‘22.12월	‘23.12월
시설준공		‘22.12월	‘23.12월

주: 1)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붕괴 예상에 따른 공사 중지

자료: 농촌진흥청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산림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국가에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율은 전년(79.9%)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400억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산림청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립·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시행 2021.12.16.)을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미수납 시 인허가 기관에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취소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및 미수납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산림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수납 채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2018~2021년 부담금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임산물수입이익금은 전액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57억 9,000만원으로 납기과도래한 산림청 전체 미수납액 655억 900만원 중 39.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특회계(임업계정)의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392억 8,000만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은 임업계정 미수납액 내에서 65.7% 비중을 차지한다.

[2018~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18	107,511	200,361	160,381	80.0	39,977	3
'19	148,857	197,752	157,953	79.9	39,799	-
'20	160,318	251,737	208,927	83.0	42,810	-
'21	177,694	298,992	261,356	87.4	37,636	-

자료: 산림청

[회계별 납기도래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농특(임업계정)		에특	균특	책특	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	21,174	39,280	25,790	4,482	573	-	65,509
비중	32.3	60.0	39.4	6.8	0.9	-	10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납기도래 미수납액을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미납건수 1,567건 중 1,000만원 미만 채권이 1,293건으로 82.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금액 기준으로는 1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미납건수는 4건인데 비해 금액으로는 63억 200만원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체납액 중 24.4%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건당 평균 채납액이 15억 7,550만원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액 채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최초납기를 4년 이상 경과 한 건수가 250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1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최초납기를 4년 이상 경과 한 금액이 32억 2,7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 대비 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미납된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기도래 미납액 금액대별 내역]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 ~ 10억원	10억원 이상
미납건수(A)	1,567	1,293 (82.5)	244 (15.6)	21 (1.3)	5 (0.3)	4 (0.3)
금액(B)	25,790	3,852 (14.9)	7,330 (28.4)	4,793 (18.6)	3,513 (13.6)	6,302 (24.4)
건당 미납액(B/A)	16.5	3.0	30.0	228.2	702.6	1,575.5

자료: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최초납기 경과 기간별 내역]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 이상
미납건수(A)	1,567	718(45.8)	238(15.2)	213(13.6)	148(9.4)	250(16.0)
금액(B)	25,790	17,407(67.5)	3,494(13.5)	1,096(4.2)	566(2.2)	3,227(12.5)
건당 미납액(B/A)	16.5	24.2	14.7	5.1	3.8	12.9

자료: 산림청

(3)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의 연도말 홍보비 편중 집행 문제(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어선거래시스템 사업은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 편의 제공 및 어업 진입·퇴출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 홍보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말인 12월에 홍보비 집행액의 85.1%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업 홍보계획이나 일정 수립 등 면밀한 준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입물품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물품이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해양수산부가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의 홍보비 예산 등 집행이 연도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1년 3월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어선거래시스템 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연중 고르게 홍보비를 집행하였고, 11월에는 홍보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선중개업 및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사업의 홍보사업비를 연중 고르게 집행하였으나, 2021년도 홍보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시스템을 활용하던 관련 종사자가 주된 홍보 대상이었으므로 향후 신규 거래자 등에게도 어선거래시스템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시정요구는 2020년 동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홍보계획이나 일정 수립 없이 연말에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물품 등을 구매했으므로, 홍보비를 계획적으로 연중 고르게 집행하여 홍보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1년도 어선거래시스템의 홍보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달력, 쿠폰을 연중 배포하거나, 우수중개업자에게 상품권, 가습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홍보비는 연중 고르게 집행되었으나, 기존에 거래시스템을 활발하게 사용하던 최대접속회원이나 우수중개업자에게 주로 유인으로 작용했고, 신규 거래자 등에게 동 시스템을 안내하거나 시스템의 장점 등을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홍보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홍보비 구분	홍보기간	홍보기관(대상)	집행액
홍보물 제작 등(달력 등)	연중	관련종사자	49,208,000
시스템 최대접속회원 대상 e-coupon 구매	연중	관련종사자	596,500
우수중개업자 대상 상품권 구매	1/1 ~ 10/31	관련종사자	2,500,000
우수중개업자 대상 가습기 구매	1/1 ~ 10/31	관련종사자	775,000
합 계			53,079,500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21년도 전체 어선거래는 9,415건 이루어진 데 비해,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된 매물은 총 317건이고, 이를 이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19건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통한 신규 거래자 등의 유입 및 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홍보사업이 신규 거래자 등에게도 어선거래시스템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소형유조선 부족 대란 방지를 위한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을 이 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선사에게 지원하는 용자 사업이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형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조치로 인한 선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를 위한 동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말 기준 전체 소형유조선 수 565척 중 약 25.5%인 144척이 2022년도부터 이중선저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이유로 운항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해양수산부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실적 부진에 따라 대규모의 소형유조선 운항 중지로 인한 소형유조선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을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선사의 자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융자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2022년부터 고정금리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22.1. 기준 1.66%)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리조건을 변경하는 등 선사에게 유리하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 8월, 10월에는 대출심사 요령, 운항중지 소형유조선 현황 등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사업자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사업계획,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부터 해경과 협조하여 불법운항 선박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2021년 자부담율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사측 부담 부족 등으로 인해 대출승인이 거절되고, 일부 선사는 대출을 중도포기하여 동 사업의 실집행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중선저구조 의무화에 선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융자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한편, 예산액도 97억 7,400만원을 감액한 2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1년도에 대출승인되어 수협은행에 교부된 금액은 14억 1,800만원으로 2020년 집행액 15억 4,300만원보다 감소하였고, 선사의 중도포기가 발생하여 실집행액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6억 9,08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2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12,024	12,024	0	2,100	0	13.0	1,565	15.8	0	8,359
2020	12,024	3,024	0	0	0	51.0	1,543	51.0	0	1,481
2021	2,250	2,250	0	0	0	2,250	1,441.8 [690.8]	50.7 [30.7]	0	808.2 [1,559.2]
2022	2,250	2,250	0	0	0	2,250	210	9.3	미정	미정

주: 2022년도 집행액은 6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대출신청 및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용자율 인상에 따라 대출신청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업체의 담보 부족,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대출승인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대출승인액은 2019년, 2020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한편 대출승인이 된 경우에도 2021년에는 일부 선사가 경영 여건 및 신규 선박 건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2022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대출 신청·승인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미승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년	대체건조	10	5,019	4	1,515	6	3,504
	개 조	4	400	1	50	3	350
	합 계	14	5,419	5	1,565	9	3,854
2020년	대체건조	4	2,143	3	1,348	1	795
	개 조	11	1,565	2	195	9	1,370
	합 계	15	3,708	5	1,543	10	2,165
2021년	대체건조	3	3,099.6	0	0	3	3,099.6
	개 조	15	2,699.8	8 (5)	1,441.8 (690.8)	7	1,258.0
	합 계	18	5,799.4	8	1,441.8	10	4,357.6

주: 2021년 () 안 숫자는 실제로 대출실행한 경우임

자료: 해양수산부

소형유조선 보유 선사는 대체로 영세하여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대체건조신청은 3건 모두 대출승인이 거절되었고, 개조신청은 15건 중 8건은 승인되고, 7건은 거절되었다. 그리고 2021

년 대체건조신청은 평균 대출신청금액이 10억 3,320만원이었고, 개조신청은 평균 대출신청금액이 1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출신청금액이 클수록 담보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므로, 담보여력이 없는 영세 선사는 대체건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렵고, 2021년 용자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되어 용자신청액 상한이 인상된 데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출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선사는 2억 3,000만원~2억 9,100만원을 대출신청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을 하지 않았고, 비교적 소액인 6,300만원~2억 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는 해당 선사가 경영여건이나 신규 건조 선박의 규모·유형 등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투자부담으로 인해 당초 신청했던 대로 개조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담보 부족 및 경영여건 변화가능성, 투자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출지원이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2년 1월 기준으로 이중선저구조 의무를 미충족하여 운항금지되는 선박 수가 179척에 달하고, 이후 선령 30년에 도달하는 선박 중에서도 단일선체구조 선박이 매년 추가로 운항중지될 것이므로, 향후 운항금지 선박 수가 증가하여 관련 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소형유조선 운항 중지로 인한 소형유조선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한 선사의 경영여건 및 실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효과 및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28건으로 시정 6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100건이며, 이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22건이며, 조치중 6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등 4건이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0	0	4	9	45	(3)	55	54	1
특허청	0	0	1	2	11	0	14	13	1
중소벤처기업부	0	0	1	14	44	0	59	55	4
합계	0	0	6	25	100	(3)	128	122	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의 실행 저조(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구축 사업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사업의 세사업인 바이오인력양성 사업에서 세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생산량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BIG3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2019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20년 실집행예산이 2022년 4월이 되어야 전액 집행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예산액인 건축비 35억 6,300만원은 2022년 4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회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의 실집행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기간(2020년~2023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 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 요구사항 조치 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설계용역이 2021년 11월에 착수되어 건축비가 포함된 2021년 예산이 이월된 상태이며, 설계용역 착수 이후 사업시행기관의 총사업비 증액 요청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는 등 추가적인 지연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3억원 중 국비 222억원을 지원하여 인천 송도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 중 국비 전액을 부담하고, 동 사업의 공동수행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35억 6,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사업시행기관인 인천광역시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4억 1,200만원 중 5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5,800만원을 실집행 이월하였다.

[2021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세세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세사업	주관기관	예산 실집행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1	바이오나노 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구축	인천 광역시	3,563	849	4,412	554	3,858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1년 7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설계용역사를 선정하고, 2021년 11월 23일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022년 3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5월에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었다. 동 사업의 설계용역 일시중단은 물가 상승 등 건축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313.2억원에서 451.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기관인 인천광역시는 2022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8월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나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사업비 실집행이 늦춰질 예정이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구축 세세사업의 추진 경과]

기간	주요 추진내용
2020.12~2021.07	· 사전절차 이행(개념설계, 공공건축 심의 등)
2021.07~2021.11	·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사 선정 · 설계용역 착수(2021.11.23.)
2021.11~2022.06	· 본 설계 용역 · 2022.03 기본설계 완료 후 5월 일시 중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구축 사업은 2020회계연도에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본 설계용역에 착수하기 이전에 개념설계, 건축기획(GMP컨설팅 포함)을 실시하고, 공공건축심의를 받으며 본설계 용역 착수가 지연되었다. 또한 본설계 용역 착수 이후에도 사업비 증가 문제로 사업 변경 협의 절차 등 추가 지연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시행기관인 인천광역시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내용과 방식의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사업의 예산 실집행 저조 문제가 개선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취업실적 제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세사업인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 교육은 2020 회계연도에 교육대상자 1,037명중 취업 인원은 25%인 262명으로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교육 기간이 2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취업에 필요한 생산기술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조선업 생산현장에서 취업 성과 저조 등 인력 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 중 생산기술 혁신 역량강화의 교육대상자 1,052명 중 311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전년 대비 4.3%p 상승한 29.5%로 나타나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 요구사항 조치 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세사업인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교육 사업은 전년대비 취업률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세사업에 비해 취업률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 있으므로 취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은 2021년에 조선업 퇴직자나 타산업 재직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관련 교육을 시행해 3,26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2,004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었다. 세사업별 교육수료자 중 취업자는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교육 사업이 29.5%, 생산기술혁신채용연계교육 사업이 84.6%, LNG화물차기능인력양성교육 사업이 49.0%이다. 생산기술혁신채용연계교육 사업은 교육과정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취업컨설팅,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면서 다른 세사업에 비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의 교육과정별 교육 현황]

(단위: 명, %)

지원내용	교육내용	교육신청 인원	교육수료 인원(A)	취업인원 (B)	B/A	훈련수당 지급인원
생산기술 혁신역량 강화 교육	신소재 특수용접	327	274	108	39.4	0
	생산공정 전문자격 인증	342	304	130	42.8	0
	생산현장 Skill-up 기술	367	344	50	14.5	0
	스마트 ICT융합 생산기술	140	131	23	17.6	0
	소 계	1,176	1,053	311	29.5	0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	Pipe-Line 제작·설치	334	322	295	91.6	192
	기관 기계장비 설치기술	72	72	71	98.6	30
	선체Block 제작	1,042	1,003	820	81.8	579
	선박 부분품 제작·설치	204	192	152	79.2	61
	전기·제어 시스템	127	115	104	90.4	62
	소 계	1,779	1,704	1,442	84.6	924
LNG화물창 기능인력 양성 교육	LNG 화물창 보온기술	296	288	133	46.2	0
	LNG 화물창 용접기술	246	224	118	52.7	0
	소 계	542	512	251	49.0	0
합 계		3,497	3,269	2,004	61.3	9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 교육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 교육 추진을 통해 2021년 동 교육 수료자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4.3%p 상승하여 시정요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생산기술혁신역량강화교육의 취업률은 다른 세사업인 생산기술혁신채용연계교육 84.6%, LNG화물창기능인력양성교육 49.0%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업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의 집행 주의 필요(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0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출장여비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홍보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220-01) 예산을

시설장비유지(210-09) 및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전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출장여비를 다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국회는 2022년도 예산 편성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2020년에 전용한 금액만큼 축소하여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주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예산 편성시 2020년에 전용한 금액(약 9,400만원) 등을 축소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11월부터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국외여비를 연말(2021.11.~2021.12.)에 수차례에 걸쳐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홍보비·인쇄비 등을 집행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산학협력인력양성 국내여비 3,1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였는데, 전용사유로 “인력지원사업 시책 홍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동 세부사업 내 여유재원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경비(글로벌성장정책관) 사업에서 국외여비 1,400만원을 전용하여 금융지원상 시상식(12.28) 현수막 및 기념품 제작에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집행으로 보인다.

국회가 2022년도 예산 편성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2020년에 전용한 금액만큼 축소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한 취지는 이와 같이 불용해야 할 경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홍보비·인쇄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 취지이나,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편성된 일반수용비 내에서 필요한 홍보비·인쇄비 등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이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문제(특허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도 예산 대비 수입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는 특허청이 예산 편성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시정요구(제도 개선)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청 세입은 경기변동, 기업경영 방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나, 세입 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출원 동향 및 출원량 증감 요인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2021.12.)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특허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의 2021년 초과수입 규모(495억 7,200만원)가 2020년 402억 4,300만원보다 커졌으므로, 2023년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예측오차가 감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의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예산액 4,942억 1100만원에 비해 184억 1000만원을 초과 수납하여 수납률 103.7%를 기록하였고, 2020년의 경우 예산액 5,076억 6,200만원에 비해 402억 4,300만원을 초과 수납하여 수납률 107.9%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예산

액 5,424억 8,800만원에 비해 495억 7200만원을 초과수납하여 수납률 109.1%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초과수납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납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사업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동향 및 출원량 증감 요인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2021.9. 완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2021년도 오차가 이전 연도에 비해 커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2023년 수입예산 편성시에 수입전망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보건복지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36건으로 시정 4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13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05건이며, 조치중 31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다함께 돌봄 사업 등 3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0	0	2	14	88	0	104	7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0	0	19	0	19	19	0
질병관리청	0	0	2	6	6	(1)	13	11	2
합계	0	0	4	20	113	(1)	136	105	3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2	1	1
합계	2	1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다함께 돌봄 사업 실행률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다함께돌봄사업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1.6월 현재까지 총 518개소가 설치되어 확충목표 대비 센터 증가 추이는 다소 더딘 상황임에도 매년 예산을 확충목표 기준으로 과다 추계하였다.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개소	173개소	523개소	973개소	1,800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

국회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는 다함께돌봄사업의 신규 설치 규모를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850개소에서 450개소로, 학교돌봄터의 경우 750실에서 100실로 축소하였으며,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용도변경 및 유휴공간 활용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 과장 회의 정례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의 신규 설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의 실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실행률 부진에 이어 2021년에도 역시 실행률이 부진하였다. 다함

계돌봄센터의 경우 450개소 신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0%인 270개소만이 설치 운영되었고,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추진한 학교돌봄터도 750실의 신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6.5%인 49실만을 운영하였다.

2022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 60%만이 신규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같이 450개소의 신규설치 계획을, 학교돌봄터는 대규모로 축소된 100실의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¹⁾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12.4%, 학교돌봄터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함께돌봄사업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신규설치계획	실적	목표달성도
다함께 돌봄센터	2021	37,210	33,846	450개소	270개소	60.0
	2022	47,054	26,441	450개소	67개소	14.9
학교 돌봄터	2021	3,947	282	750실	49실	6.5
	2022	1,534	748	100실	16실	16

주: 1. 2022년도 실적은 6월말 기준

2. 예산액 및 집행액의 경우 신규설치비용을 제외한 기 설치된 곳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에 신규 설치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현재 진행률을 보면 여전히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의 돌봄교사들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각 주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향후에도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신규설치 통계는 5월말 기준으로 제출하였다.

(2)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사업은 전문상담전화(1393)을 운영을 통한 24시간 응대체계 구축상담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인력의 업무 전문성에 비해 급여 및 처우가 낮아 상담인력이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2억 3,5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국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인력에 대한 급여인상,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자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1393 상담인력을 확충²⁾하고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³⁾하였으며, 소진방지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사업은 2020~2022년도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채용 결과 모집인원 대비 신규채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6월 기준 충원율은 70%로 저조하게 나타나,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처우개선 등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의 불안정한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급 증액, 상담사 소진방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한 상담지원 등 점진적 처우개선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20~2022년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인력에 대한 총 10회의 채용을 실시하였으나, 모집인원 대비 신규채용인원을 충족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2) ('20) 26명 → ('22 4월) 80명

3) ('20) 250만원 → ('21) 255만원

4)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확대예정인 정원을 고려하여, 정원에 비해 모집인원을 늘려 채용을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20~2022년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사업 인력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공고연월	계약일	정원	모집인원	신규채용	현원
1	2020년 2월	2020년 3월	26	00	5	21
2	2020년 9월	2020년 10월		13	5	24
3	2021년 1월	2021년 3월		12	11	31
4	2021년 7월	2021년 8월	57	25	5	30
5	2021년 8월	2021년 9월		32	9	39
6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2	7	46
7	2021년 11월	2021년 12월		18	5	51
8	2021년 12월	2022년 2월		36	5	50
9	2022년 2월	2022년 4월		35	4	52
10	2022년 5월	2022년 7월	80	29	7	56
	계	-	-	-	63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0~2022년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체계 개선 사업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력은 16명에서 56명까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충원율은 74.0%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상담인력을 2020년 26명에서 2022년 4월부터 80명으로 확충하였다고 하였으나, 2022년 6월 기준 현원은 56명, 충원율은 70.0%로 집계되어 인력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2022년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사업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2년 6월
정원	26	26	57	80
현원	16	20	50	56
충원율	61.5	76.9	87.7	7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상담사 미충원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담 업무의 공백을 야기하고 기존 상담사의 업무는 과중되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문제(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교육, 예방교육 강사 양성·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온라인 홍보 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대국민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인원’을 신규지표로 개발(2022.1.)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신규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현황]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인원	목표	-	5,900	교육 수료자 수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발급자료
	실적	5,369	-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온라인교육 사이트는 당초 예방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중 학교 등 일부 신청자의 사전 교육용으로 활용되었으나, 개인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그런데 목표 대비 성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자의 소속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교육의 주요 참여자, 마약류 및 약물 노출 취약계층 등의 참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 여부 등도 점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온라인교육 사이트 수강자 현황]

(단위: %, 명)

성과지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온라인교육 사이트 수강자 수	목표	54,025	59,675	59,675	14,497
	실적	54,144	66,823	13,179	5,369
	달성도	100	112	32.8	37.0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계획서, 사업실적결과보고서

15. 환경노동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92건으로 시정 7건, 주의 68건, 제도개선 134건이며, 이 중 1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63건이며, 조치중 29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4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0	0	3	35	49	(13)	74	67	7
기상청	0	0	2	12	10	(4)	20	16	4
고용노동부	0	0	2	21	75	0	98	80	18
합계	0	0	7	68	134	(17)	192	163	2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고용노동부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계 변경 및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환경부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환경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사업화까지 연계·융합할 수 있는 청정대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연말이 되어서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2020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13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7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21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74.8%를 집행하면서 집행률을 제고하였고, 설계용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2022년 6월 완료하고, 이후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여 클러스터 사업의 적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당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설계 변경, 총사업비 협의 및 향후 진행될 예정인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시점은 2021년 8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비용과 건축공사 단가 변경 등으로 인한 중간설계 변경, 중간설계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재원 협의 등의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이 2022년 6월 1일로 연장되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절차별 추진계획 및 실제 추진현황]

내 용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현황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	'20.12 ~ '21.10월	'20.12~'22.6월	설계기간 변경
부지매입	'21.10월	'21.12월	
시설공사 발주	'21.10 ~ 12월	미정	타당성재조사 결정시기에 따라 유동적
감리용역 발주	'21.10 ~ 12월		
공사 착공 및 완료	'21.12 ~ '23.2월		

자료: 환경부

이로 인해 환경부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예산 6억 700만원 중 기성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억 3,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지연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편성된 건설비 예산의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2020~2022년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0	0	607	0	607	330	0	277
	공사비 (420-03)	6,842	6,842	0	△5,200	1,642	0	0	1,642
	감리비 (420-04)	244	244	0	0	244	0	0	244
	시설부대비 (420-05)	14	14	0	0	14	0	0	14
	건설보상비 (410-00)	7,500	7,500	0	0	7,500	7,152	0	348
	소계	14,600	14,600	607	△5,200	10,007	7,482	0	2,525
2022	공사비 (420-03)	13,684	13,684		△6,700 ¹⁾	6,984	0		
	감리비 (420-04)	487	487		0	487	0		
	시설부대비 (420-05)	29	29		0	29	0		
	소계	14,200	14,200		△6,700 ¹⁾	7,500	0		

주: 1)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공사비 예산 중 67억원을 이용하였음

1. 2022년 집행 실적은 5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2021년 부지매입을 위해 편성된 75억원 중 71억 5,200만원만 집행되었을 뿐, 타 사업으로 이용된 52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16억 4,2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9억원은 전액 불용하였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및 추가적인 비용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다는 초안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¹⁾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하느냐, 환경부는 2022년 4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사전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건설비 예산 142억원 또한 집행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절차를 비롯하여 실제 타당성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그에 근거한 총사업비 재협의, 실시설계 재개 등으로 인해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향후 추진일정 또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동 사업은 설계 변경이나 총사업비 협의 및 향후 진행될 예정인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표로 한 구축 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이 수차례 걸쳐 변경되면서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법적 절차인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비롯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점검·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 중단(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환경부의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집적단지 등 친환경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천수와 광역상수도 원수 등을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린 뉴딜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 전체 예산(32억 2,000만원)의 집행률은 63.8%이고, 설계비 및 공사비가 모두 반영된 시범사업(20억 2,000만원)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대규모 이월로 인해 집행률이 42.2%에 불과하는 등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추진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21년으로 이월된 예산 20억 2,000만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6,200만원을 제외한 16억 5,8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집행을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설계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차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사업 중 종합환경연구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부족으로 인해 사업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강홍수통제소, 한강물환경연구소, 종합환경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수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강물환경연구소는 2020년 설계 이후 공사를 추진하여 각각 2021년 4월과 6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종합환경연구단지는 2020년 설계를 추진한 이후 2021년 예산을 통해 공사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이 보류되는 등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기본설계 중간보고 결과, 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한 연약지반 문제, 노후 전기설비 교체, 기계실 신설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약 511억원 규모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1차 설계안), 이후 당초 계획한 사업비(130억원)에 맞춰 사업 규모(2,000RT → 300RT)²⁾를 조정(1차 수정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성과 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해 수열에너지 발전량 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여 공사방법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2차 수정안에서는 부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정하여 총 10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나, 시범사업 타당성 관련 전문가회의 시 추가 공사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예산 투자 대비 편익이 낮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2021년 8월 설계를 종료하고 사업을 보류하였다.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 추진경과]

구분	예산 편성시	1차 설계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사업규모	2,000RT	2,000RT	300RT	300RT
총사업비	130억원	511억원	130억원	100억원
수열설비 (히트펌프 등)	40억원	116억원	22억원	22억원
부대시설 (연약지반 개량 등)	90억원	395억원	108억원	78억원

자료: 환경부

2)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측정단위로 냉동톤·제빙톤(RT)을 활용한다. 1RT는 0℃의 물 1ton을 24시간 동안 0℃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해야 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이후,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비롯하여 시범사업 대체지를 검토하고 동 내역사업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된 건설비 예산 50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종합환경연구단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종합환경연구단지)	5,040	5,040	5,040	0	0	5,040
- 공사비(420-03)	4,920	4,920	4,920	0	0	4,920
- 감리비(420-04)	80	80	80	0	0	80
- 시설부대비(420-05)	40	40	40	0	0	40

주: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2021년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내역 기준임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종합환경연구단지에 대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은 당초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하천수의 확보 가능여부 등 수열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였을 뿐 연약지반 개량 등 부대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1999년에 준공된 종합환경연구단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용량 및 기존 기계실 면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향후 2025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므로, 환경부는 종합환경연구단지 사례와 같이 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점검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이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³⁾

3) 환경부는 동 시범사업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민간위탁(한국수자원공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사업 타당성

(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미흡(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참여자 목표인원은 1만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2,220명(22.2%)에 불과하였고, 동료지원가 목표인원은 500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142명(28.4%)이며, 취업연계 성공건수는 369건으로 목표(3,000명) 대비 12.3%에 불과하다.

국회는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향후 적정 목표 인원을 편성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2년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고, 사업활성화 및 참여유인을 확대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요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고, 취업연계 건수도 저조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시범사업으로 신규 시행한 2019년에도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6월말 기준 예산상 목표인원은 8,000명이나 지원인원은 926명(11.6%)에 불과하여 상당액 불용이 예상되므로, 2022년에도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토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별 예산 규모 산출,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019~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동료지원가 지원 실적]
(단위: 명, %)

구분	연도	예산상 목표인원(A)	지원인원 (B)	B/A
참여자	2019	9,600	3,995	41.6
	2020	10,000	2,220	22.2
	2021	10,000	2,609	26.1
	2022	8,000	926	11.6
동료 지원가	2019	200	120	60.0
	2020	500	142	28.4
	2021	500	166	33.2
	2022	400	166	41.5

주: 2022년은 6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취업연계 성공수당으로 3억원(3,000명×20만원×국고지원 5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동료지원활동 후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의 취업연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연계, 취업 등 포함)에 성공한 건수는 총 418건으로, 취업연계 목표 인원(3,000명) 대비 13.9%, 참여자 대비 16.0%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이후 취업연계 현황이 매우 낮음에도 2022년에 참여자 대비 30% 취업성공이라는 높은 목표 수준(2,400명)을 설정⁴⁾하였고, 2022년에도 동 수당의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원가능한 수준의 목표와 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가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연계가 저조한 지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2022년 취업연계 성공수당: 2억 4,000만원 = 2,400명 × 20만원 × 50%

[2020~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역별 취업연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울산	계
2020	참여자 (A)	260	248	143	95	447	46	160	151	262	351	57	-	2,220
	취업연계 (B)	9	23	16	0	120	18	39	4	62	65	13	-	369
	B/A	3.5	9.3	11.2	0.0	26.8	39.1	24.4	2.6	23.7	18.5	22.8	-	16.6
2021	참여자 (A)	263	312	143	169	244	86	252	168	318	336	49	269	2,609
	취업연계 (B)	28	55	19	12	48	30	31	6	69	76	2	42	418
	B/A	10.6	17.6	13.3	7.1	19.7	34.9	12.3	3.6	21.7	22.6	4.1	15.6	16.0

자료: 고용노동부

(4)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청년취업지원 사업 중 일부는 청년 구직 수요와 기업 구인 수요 간의 미스매칭,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였다.

국회는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 설계를 통해 청년-기업 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청년취업 지원 및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경험 부여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면밀히 관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회복에 초점을 두어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사업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채용된 청년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순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디지털일자리의 경우 고용유지율이 낮아 민간고용으로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제도 설계시 최소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유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 제고 및 학업병행 지원 등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과 청년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청년 채용을 위한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있다.

[2021년 고용장려금 주요 사업 개요]

구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수행기간	2018~2021년	2016년~계속	2020~2021년	2020~2021년
사업 대상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만 15세~이상 34세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만 15세~34세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IT 관련 직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 업 사업주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계약	정규직	정규직	3개월 이상 근로계약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지원수준	75만원	6개월 주기 지원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 하는 경우 기업 은 300만원을,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시 적립액 1,200만 원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	190만원	100만원(추가 지원액 6개월 간 360만원)

구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주기	1회차 6개월 2회차 이후 3개월 단위	2년 간 매 6개월 단위	6개월 간 매 1개월 단위	6개월 간 매 2개월 단위
최대 지원기간	기업당 최대 3년	2년	6개월	6개월(이후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
'21년 목표 신규 지원인원	9만명	12만명	12만명	11만 2,500명
실제 신규 지원인원	8만 4,833명	11만 9,783명	10만 6,928명	10만 2,398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고용장려금 사업은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왔는데, 실제로 동 장려금들이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장려금의 순고용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용 청년이 증가하였는지가 아닌 사중손실(임금보조가 없더라도 본래의 필요에 의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기업이 무상으로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 및 대체효과(기업 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근로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체하여 고용의 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⁵⁾에서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등 상쇄효과를 감안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고용효과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30~50%로 추정하고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동 조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업의 인력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장려금 때문에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6개월, 1년 등 단기간 지원되었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순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2019. 9.

한편, 동 장려금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고용유지’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각 고용장려금의 1년 6개월 고용유지율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5.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0.7%, 청년디지털일자리는 24.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44.1%로 비교적 장기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할 때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018~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의 고용유지율]

(단위: %)

연도 (채용/가입 시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018	84.2	69.8	55.6	48.5	91.5	80.0	70.7	67.2
2019	92.2	77.7	61.8	52.6	89.0	78.5	71.1	67.4
2020	99.7	85.7	-	-	91.1	81.1	-	-
2021	-	-	-	-	90.7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율]

(단위: %)

구분	6개월	1년	1년 6개월
청년디지털일자리 ¹⁾	71.7	42.3	24.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²⁾	85.3	63.1	44.1

주: 1) 18개월 고용유지율의 경우에는 2020년 채용청년을 대상으로 추출함

2) 2022년 5월말 기준, 첫 지원 후 18개월이 지난 경우를 대상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의 고용유지 효과가 낮은 것은 이·전직이 잦은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69.6%, 계약만료인 경우가 23.7%이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가 75.9%, 계약만료가 11.0%로, 대부분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단위:건, %)

상실 사유		건수	비율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66,758	69.6
	계약만료, 공사기간 종료	22,775	23.7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38,775	75.9
	계약만료, 공사기간 종료	5,628	11.0

주: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자발적 퇴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퇴사를 한 경우, 보수 및 복지 등의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 등 기업과 청년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장려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순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유지율이 낮아 청년들의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이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유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 제고 및 학업병행 지원 등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과 청년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6. 국토교통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57건으로 시정 53건, 주의 51건, 제도개선 62건이며, 이 중 9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20건이며, 조치중 37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도시재생 융·출자 사업 등 4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2.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0	0	50	38	53	(8)	133	104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7	6	0	13	7	6
새만금개발청	0	0	3	6	3	(1)	11	9	2
합계	0	0	53	51	62	(9)	157	120	3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도시재생 융·출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문제(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은 2020회계연도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31.7%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간 집행실적¹⁾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의 추진현황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면밀하게 수요를 예측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사업준비와 집행관리에 대한 주의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1) 2016년 8.9%, 2017년 49.0%, 2018년 89.9%, 2019년 35.4%, 2020년 31.7%

또한 도시재생지원(출자) 사업에 대해서도 모(母)리츠에서 자(子)리츠로 출자한 실적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계획액 1,080억원 중 777억 9,600만원이 모(母)리츠에서 자(子)리츠로 출자되었지만, 이는 2019년에 계획하였으나 출자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2020년에 출자하기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용자) 사업은 2022년 예산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2021년 2,235억원에서 2022년 1,501억원으로 23.8% 축소하여 편성하였고, 향후에도 추진일정, 집행 소요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도시재생지원(출자) 사업 또한 2022년 예산은 모리츠 유보금 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2021년 1,580억원에서 2022년 300억원으로 81% 축소하여 편성하였고,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신규수요도 적극 발굴하여 출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도시재생 용·출자 사업은 2021회계연도에도 당초계획액 대비 용·출자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용자) 사업의 최근 5년 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1회계연도에는 당초계획액 2,234억 5,000만원 중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7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정계획액 1,444억 5,000만원 중 1,019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425억 2,100만원을 불용해 당초계획 대비 45.6%의 집행률을 보였다.

[최근 5년 간 도시재생지원(용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C)	불용액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 (C/A)	수정계획 대비 집행률 (C/B)
	당초(A)	자체변경 등	수정(B)				
2017	55,048	-	55,048	26,954	28,094	49.0	49.0
2018	74,832	-	74,832	67,238	7,594	89.9	89.9
2019	132,984	△85,864	47,120	47,120	-	35.4	100.0
2020	170,950	△116,750	54,200	54,200	-	31.7	100.0
2021	223,450	△79,000	144,450	101,929	42,521	45.6	70.6

자료: 국토교통부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지원(용자) 사업의 집행실적을 2021회계연도 당초 계획 편성 당시의 산출 내역과 비교해보면, 예측하였던 사업장에서 용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서대구리츠 및 창동리츠와 일부 도시재생 뉴딜선정 사업지에 불과하였으며,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문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 497억 7,900만 원의 신규 용자가 이루어지는 등 계획액 편성내역과 집행실적 간 괴리가 있다.

[2021회계연도 용자사업 기금운용계획 산출내역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용자계획액	용자집행액
출·용자지원 복합개발사업 (5개소)	서대구리츠 2년차	11,000=67,300×50%×33%	15,250
	창동리츠 1년차	59,000=655,500×30%×30%	36,000
	고양혁신지구리츠 1년차	7,570=252,500×30%×10%	-
	천안혁신지구리츠 1년차	9,430=188,600×50%×10%	-
	구미혁신지구리츠 1년차 ¹⁾	10,450=209,000×50%×10%	-
단독용자지원 복합개발사업 (3개소)	종로정비사업 3년차	30,000=1,737,000×5%×34%	-
	공공재개발 1년차	4,000=160,000×25%×10%	-
	용산혁신지구 1년차	18,000=592,700×30%×10%	-
	문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	49,779 ²⁾
공간지원리츠 (2개소)	제1호 SH리츠 2년차	54,000=180,000×50%×60%	-
	제2호 LH리츠 1년차	10,000=200,000×50%×10%	-
도시재생 뉴딜선정(10개소)		10,000	900
합 계		223,450	101,929

주: 1) 구미혁신지구리츠는 '21년 7월 단독용자지원 복합개발사업으로 변경

2)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문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 49,779백만원 집행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출자) 사업(모태펀드 제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모(母)리츠인 ‘도시재생앵커리츠’로 출자하고, 도시재생앵커리츠가 기금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리츠 설립일정에 맞추어 자리츠로 출자를 진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사업 집행률(기금→모리츠)은 2019년부터 100%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자금의 실제 집행은 앵커리츠의 출자실적(모리츠→자리츠)을 살펴 봐야 한다.

자리츠 출자는 당초계획액 편성에서 예상하였던 수요 대비 지속하여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은 복합개발사업 3개소, 공간지원리츠 1개소 출자 예정이었으나 출자되지 않았고, 2020년 당초계획액에서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개발사업 2개소, 공간지원리츠 1개소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졌지만, 대상 사업이 달라지면서 출자 규모는 예상보다 작았다. 2021년 복합개발사업 3개소, 공간지원리츠 1개소 출자를 계획하였지만, 복합개발사업 1개소 및 공간지원리츠 1개소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졌다.

[도시재생 출자사업의 당초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비 실제 출자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당초 계획액 반영	복합 개발사업	3개소 (인천역/대전역/ 신규발굴) 693억원 ¹⁾	2개소 (인천역/대전역) 800억원	3개소 (부천혁신/광주혁신/ 신규SPC(서울창동)) 1,200억원
	공간지원 리츠	1개소 140억원 ¹⁾	1개소 280억원	1개소 280억원
출자 진행	복합 개발사업	없음	2개소 (고양혁신/천안혁신) 526억원	1개소 (성남지식산업센터) 392억원
	공간지원 리츠	없음	1개소 252억원	1개소 236억원

주: 1) 복합개발사업과 공간지원리츠 출자를 합하여 당초계획액으로 83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계획변경을 통해 158억 6,400만원을 증액한 991억 6,4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중 6억원은 혁신지구 리츠설립에 출자, 3억원은 앵커리츠 설립에 출자되고, 남은 982억 6,400만원이 앵커리츠에 납입되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금에서 모리츠로 출자한 금액은 총 3,546억원이나,

모리츠에서 자리츠로 출자한 금액은 1,406억원으로, 차액인 2,140억원은 모리츠인 도시재생앵커리츠에 유보되어 있다.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의 감액이 이루어졌으나,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면밀하게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집행 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광역BRT 구축 사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역BRT 구축계획 수립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광역 BRT 구축 사업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도시권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광역BRT 구축 사업은 착공 예정이던 수원-구로 광역BRT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어 예산교부 없이 전액을 불용하였고, 창원 BRT 노선도 교부된 금액을 전액 이월하여 2020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서면-충무 도시BRT 노선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33.2%로 나타나는 등 집행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였다.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수원-구로 BRT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된 광역BRT 노선 전반의 심층적인 효과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사전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역BRT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과 향후 수원-구로 광역BRT 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 방식을 시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전조사 및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을 수립·고시 완료(‘21.11)하였고, 수원~구로 광역BRT 사업은 향후 인덕원~동탄선 사업(‘26.12. 준공예정)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사업 재추진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국회에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에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을, 11월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중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경우 수립된 지 1년 이내에 사업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1년 수립된 계획에 따라 BRT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RT 구축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제3차 계획: 2017~2020, 제4차 계획: 2021~2025)²⁾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당초 종합계획: 2018~2027, 수정계획: 2021~2030)³⁾’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수립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서 선정된 12개의 BRT 노선은 2022년 5월 현재 1개 사업의 경우 타 사업 중복, 교통안전심의부결 등으로 사업이 잠정중지⁴⁾되었고, 다른 2개 사업도 타 사업 중복구간과 관련하여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거나, 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⁶⁾.

- 2)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의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교통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 불편, 교통혼잡비용 발생,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하는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도로·광역철도·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광역교통시설 운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
- 3)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버스 기반의 교통체계로의 전향을 위한 수도권 등 5개 권역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계획
- 4)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른 BRT 구축 추진 노선사업 중 사업중지된 사업 개요

사업명	노선	연장	사업비	실집행액	진행상황
시흥대로-국도1호선(수원~구로)	장안구청사거리~안양육교삼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25.9km	498억원 (국고 249억원)	22억원 (국고 11억원)	타 사업 중복, 교통안전심의부결 등으로 사업 잠정 중지, 향후 교통여건 변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 검토할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 5) 국토교통부는 잠정중지된 시흥대로~국도1호선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던 수원~구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여건 변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국회에 기보고하였으며,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6)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른 BRT 구축 추진 노선사업 중 사업중지된 사업 개요

사업명	노선	연장	사업비	실집행액	진행상황
-----	----	----	-----	------	------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사전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역 BRT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BRT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상 설정된 노선 중 일부 사업이 잠정중지되었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수립된 계획에 따라 BRT 사업이 추가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은 2018년 3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0년 예산액 162억 7,500만원의 62.9%에 달하는 102억 4,500만원을 이·전용증액하였으나, 이 중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중앙기관 이전 건립 사업의 예산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월예산은 2021년 1분기에 전액 집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전용을 지양할 것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계양·대장 광역BRT	계양~부천종합운동장, 박촌역~김포공항역	16.7	6,500억원 (0)	0	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검토 중
부천~신방화역	부천 고강지하차도 ~서울 신방화역	3.3	120 (32)	-	타 사업 증복구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자료: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으나, 2021회계연도 또한 동 사업의 공사비 중 감리비 1억 2,200만원을 세목조정하고 그대로 이월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철저한 집행관리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1년 복합편의시설 및 경찰서 건립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확보,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사업의 연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추가확보 등을 사유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의 2021년 공사비 1,308억 8,400만원 중 107억 4,500만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1억 2,200만원은 동 사업의 감리비로 세목조정하였다.

[2021회계연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이 · 전용감액			이 · 전용증액			이 ·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내역 변경	5.3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2031-305)	420-03 (공사비)	5,400	복합편의시설 (2031-304)	420-03 (공사비)	5,400	'21년 적기준공 위한 공사비 부족분 확보
전용	5.3			32	경찰서 (2033-311)	420-04 (감리비)	32	
				1,624		420-03 (공사비)	1,624	
				1,685	119특수구조단 (2034-402)	420-03 (공사비)	1,685	연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추가확보
				204		420-04 (감리비)	204	
전용	10.28			1,800	오송~청주 연결도로 (2032-312)	420-03 (공사비)	1,800	
세목 조정	11.24			122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2031-305)	420-04 (감리비)	122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러나 동 사업의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세목조정한 1억 2,200만원은 2021년에는 전액 집행되지 않고, 준공시점 미도래를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22년 2월에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10일로 건설공사 2차수의 준공일(2022년 1월 5일)보다 빨라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 연장이 필요하여 세목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에 감리비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분만 반영하여 연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은 2018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전용 후 이월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한 결산 시정요구사항(요약)]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불필요한 예산전용 지양 (2020)	지적 사항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은 예산의 62.9%에 달하는 102억 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철저하지 못한 집행 계획으로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주의
	시정 요구 사항	◦행복청은 향후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의 예산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018)	지적 사항	◦사업 첫째인 2018년의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120억원 중 51억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 42.5%에 불과 ◦행복청은 청사어린이집 조기 건립을 위해 설계비 일부를 공사비 등으로 세목조정하였으나, 조정한 공사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차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음	주의
	시정 요구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4)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새만금개발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내부개발 활성화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옥구, 계화)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0회계연도 결산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동 사업은 옥구배수지와 장신배수지⁷⁾ 건설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최종 위탁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도 예산현액 10억 3,400만원 중 11.9%인 1억 2,300만원을 실집행하고 9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신배수지 건설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부안군의 요청에 따라 당초 내역사업별 예산편성시 계상된 금액보다 증액하여 교부하였으나, 교부된 총 보조금 4억 3,200만원의 30%인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새만금개발청은 국고보조사업의 취지를 살려 실질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진척률을 보조사업자인 군산시와 함께 관리하여 새만금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사업점검회의를 10회 개최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매월 점검을 통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새만금개발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중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추가 지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세계잼버리대회⁸⁾(23년 8월) 및 스마트수변도시 조성⁹⁾(24년)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⁸⁾ 적기에 생활·공업용

7) 새만금개발청은 장신배수지 건설사업의 배수지 지반고가 낮고 안정적 용수공급에 필요한 수두(50m) 확보를 위해 2021년 6월 배수지 위치를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 부안군 계화면 의북리로 조정하여, 이전부터 장신배수지 건설사업을 위해 부안군에 교부된 사업비는 2021년부터 계화배수지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다.

8) 세계잼버리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합동 야영대회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

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당초 202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2년~2023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0년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지 변경에 따라 과업이 중지되었다. 이후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및 배수지 위치 조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설계 내역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자체조정으로 253억원에서 404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이후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였으나,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으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추진 경과]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계화배수지 건설사업
- ('15.11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19.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12월 실시설계용역 중지 * 20. 4월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9월 중지 - ('19.12월)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타당성조사 완료(환경부) - ('2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 수요량 재산정·시설용량 조정(37천㎡→25천㎡) - ('21.2~10월) 실시설계 완료 * 사업기간 +2년 조정(준공연도 '22년→'24년) - ('21.11월) 총사업비 자체조정 * 총사업비 211억원→294억원 - ('21.12월) 공사계약 및 착공 - ('22. 1월) 공사중지 * 사유: 토지보상 지연 등	- ('15.11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19.12월)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타당성조사 완료(환경부) - ('20.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0월 실시설계용역 중지 - ('2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 ('21.6월) 배수지 위치 조정 협의 * 배수지 자반고가 낮아 안정적 용수공급에 필요한 수두(50m) 확보를 위해 위치변경(장산→계화) - ('21.6~10월) 실시설계 완료 * 사업기간 +1년 조정(준공연도 '22년→'23년) - ('21.11월) 총사업비 자체조정 * 총사업비 42억원→110억원(68억원 증액) - ('21.12월) 공사계약 및 착공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 청소년 축제로 2023년 8월에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계화배수지가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가 포함된 새만금 남측 복합단지 및 관광용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그 외 새만금 내 전 구역은 옥구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새만금수변도시의 기반시설 조성이 시작되는 2024년에 옥구배수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21.11월)]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		
	기존(A)	증감(B)	변경(A+B)	기존(C)	증감(D)	변경(C+D)	기존(E)	증감(F)	변경(E+F)
계	25,331	15,109	40,440	21,131	8,301	29,432	4,200	6,808	11,008
공사비	23,325	11,886	35,211	19,458	6,238	25,696	3,867	5,648	9,515
보상비	738	83	821	617	△17	600	121	100	221
시설부대경비	1,268	3,140	4,408	1,056	2,080	3,136	212	1,060	1,272
사업기간				'19~'22	+2년	'19~'24	'19~'22	+1년	'19~'23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2021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6월말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공사중단 내역]

계약명	계약기간	중지기간	중지사유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시설공사	2022.1.19.~ 2023.1.13.(360일)	2022.1.19.~ 공사재개 통보일까지	토지보상지연, 동절기 안전 사고 및 시공 품질 저하예방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2월까지의 옥구 배수지 건설사업을 재개하고 2024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공사추진 계획]

◦ 2022년 6~7월: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선정 및 실시 ◦ 2022년 8~10월: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재결 ◦ 2023년 1월: 토지사용개시(공탁) ◦ 2023년 2월: 문화재표본조사(진입도로부) ◦ 2023년 2월: 공사 재개 ◦ 2024년 11월: 공사 준공 ◦ 2024년 12월: 시험 가동
--

자료: 새만금개발청

그러나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은 실시설계에서 36개월(3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하고 있는 토지수용 절차가 지연 없이 추진되

어 2023년 2월에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24년 11월 옥구배수지가 준공되어 2024년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시점에 제대로 용수가 공급되기에 어려울 우려가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11월 총사업비 자체조정을 통해 2023년, 2024년 투입될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에서 관리동, 진입도로, 배수관로 신설 등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공사지연으로 물가상승 등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보조금 정산시 회계처리 오류, 납입고지 지연으로 정산 지연, 이자 정산처리 누락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적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⁹⁾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국고로 반환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¹⁰⁾ 및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¹⁾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최소한 사업집행이 완료된 다음연도까지는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조속한 정산을 유도하고 있다.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12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늦어도 사업집행 완료 다음해 중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산이자 46만원에 대해 2020년 12월에 납입고지를 하여 2021년 1월에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일반회계의 기타재산수입으로 수납해야 했으나 회계처리 오류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재산수입으로 수납하였다. 또한 2020년, 2021년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는 2022년 6월까지 납입고지 등 정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수납되고 있다.¹²⁾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 백만원)

보조금 교부 내역					집행 내역		보조금 정산 내역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회계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반납액(천원)	비고
2019	전라북도	일반회계	330-03 (차단체 자본보조)	790	790	0	'21.1.12	458	균특회계로 수납 (회계처리 오류), 납입고지 지연으로 수납처리 지연
2020				1,076	35	1,041	-	-	1,217천원 미수납 (21.2월 보고서제출), 옥구는 '22.7월 세입 처리에정, 계화는 '22.8월 중 처리예정
2021				4,288	2,622	1,666	-	-	5,915천원 미수납 (22.6월 보고서제출), *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까지 수납처리 예정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일반회계가 아닌 균특회계로 세입을 요청하여 균특회계로 수납 처리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은 납입고지가 지연되어 수납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2년 내에 미수납분을 수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12) 새만금개발청은 2020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은 2022년 7월(옥구배수지), 8월(계화배수지)에 수납완료할 수 있도록 납입절차를 진행중이며, 2021회계연도 정산이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다음연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에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2021년에도 사업이 추가 지연되고 보조금 집행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정요구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7. 여성가족위원회

가. 현 황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46건으로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7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0건, 조치중 26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새일인턴 운영 사업 1건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여성가족부	0	0	1	9	37	(1)	46	20	26
합계	0	0	1	9	37	(1)	46	20	2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새일여성 인턴의 장기고용 확대 등 질적 향상 필요 문제(여성가족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새일인턴 운영 사업은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여성에게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3월 추경에서 새일여성인턴과 취업상담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새일센터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은 2019년 71.2%에서 2020년 67.6%로 하락하는 등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 확대 등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인턴채용 기업에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채용 이후 고충노무상담, 기업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턴 취업자에 대한 장기 고용을 유도하여 질적 성과를 향상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만 확인하면 2020년 67.6%에서 2021년 69.8%로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상용직의 비율을 보면 2020년 97.4%에서 2021년 96.9%로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정규직·상용직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6개월 고용유지율은 72.8%, 12개월 고용유지율은 54.4%로, 각각 2015~2019년까지 평균 고용유지율인 73.0%(6개월), 55.2%(12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2021년 새일인턴 취업현황]

(단위: 명, %)

구분	연계인원	인턴종료 (A)	취업자 수 (B)	취업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2개월
2015	7,589	6,126	5,798	94.6	73.0	54.9
2016	7,143	5,851	5,589	95.5	72.1	53.0
2017	7,201	5,959	5,785	97.1	73.3	54.2
2018	7,410	5,859	5,618	95.9	72.3	56.9
2019	7,351	6,063	5,853	96.5	74.4	57.2
2020	6,945	5,812	5,658	97.4	72.8	54.4
2021 ¹⁾	11,761	9,611	9,312	96.9	-	-

주: 1) 2021년 취업자 고용유지율은 집계 중
자료: 여성가족부

2021년 취업자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고용유지 현황 등 조사 결과가 도출되는바, 여성가족부는 고용유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원금 신설 등 지원 규모 확대, 2020.4.~2022.5. 한시적 요건 완화 조치 등 영향을 점검·분석하여 향후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 확대 등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 록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국회운영 위원회 (6건)	대통령비서실·국 가안보실	연간 집행계획과 다른 자산 취득비 집행 주의 필요		○	○
	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연구활 동비 집행실적 저조		○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수행 필요		○	○
		둔치주차장의 진입로 개선		○	○
		조사분석 만족도, 회답기 한 준수율 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사업		○	○
법제사법 위원회 (22건)	법무부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	○
		외부 회의장 임차 지양 필요		○	○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소송성과급 지급 기준 정 비 필요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제고 및 예산편성 방 식 변경 검토 필요		○	○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의 적정 편성 등 확대 필요		○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민간위 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 미 집행 관련 예산 편성·집행 개선 필요		○	○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활성 화 방안 마련 필요		○	○
		형사보상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 행 개선 필요		○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대 책 강구 필요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법무부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개선 필요	○	○	○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방안 모색 필요		○	○
		전자감독 인력확충 등 제도개선 필요	○		○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대한 조치 필요	○	○	○
	법제처	법제정비(국민법제관 참여 활성화 및 구성의 다양성 확보 필요)		○	○
	감사원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등	○		○
		심사청구 제도 운영시 법정 결정 기한 준수 필요		○	○
	헌법재판소	인건비 과다 불용		○	○
		국선대리인보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다양한 법관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
정무 위원회 (38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
		조세심판원 인건비 등	○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
		현안과제 추진 지원	○		○
		인권보호관 지원	○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 등 이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
		보훈 교육·연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애국지사 예우 상향 필요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진료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자양 및 적정 진료비 편성 필요		○	○
		88골프장 매각 대금 수입 계상 지양		○	○
		보훈단체의 회원복지 증진 을 위한 수익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
		독립기념관의 자체수입 과 다계상 문제 개선 필요		○	○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사 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납실적 재고방안 필요	○		○
		cp등급평가사업 활성화방 안 마련 필요	○	○	○
	금융위원회	과징금		○	○
		핀테크지원사업		○	○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	○	○
		전문금융인양성과정설립	○		○
		산업은행출자(산업구조고 도화)		○	○
		중소기업은행출자(산업구 조고도화)		○	○
		산업은행출자(환경안전투 자지원)		○	○
		중소기업은행출자(환경안 전투자지원)		○	○
		정책연구개발		○	○
		국제중재수행		○	○
		재고자산매각대(공자기금)		○	○
		보증연계투자(신보기금)	○	○	○
		일반회계전입금(신보기금)	○		○
		재고자산매각대(예보채기금)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의 납부 독려 필요	○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청렴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성과지표의 성과측정방식 개선 필요)		○	○
		청탁금지제도운영(언론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필요)	○	○	○
		행정심판운영(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	○		○
		행정심판운영(수도권 외 지역순회심판 활성화)		○	○
기획재정위원회 (9건)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관리(수행기관 확대)	○		○
		국세수입(세입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추계 필요)	○	○	○
		국세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	○	○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	○	○	○
		공공기관 결산서 조기 제출 검토 필요		○	○
	국세청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	○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제고	○		○
	조달청	비축물자사업수입	○	○	○
교육위원회 (5건)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의 대학별 학교자금 매칭률 관리 철저 필요)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철저한 수탁사업 관리를 통한 이월 최소화 필요)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초기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학생정신 건강센터 지원(학생정신 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계약학과 입학률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8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가간협력기반조성		○	○
		국가연구개발타당성조사		○	○
		버스Wi-Fi화대구축		○	○
		우편물류인프라기술연구개발		○	○
		우체국물류지원단경영개선		○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 공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원칙 준수 필요		○	○
외교통일 위원회 (19건)	외교부	R&D 연구개발 과제의 규제기술 활용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본부 기본경비(직원교체여비의 연례적인 과다 전용 자양)	○	○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		○
		국가별 ODA 규모의 자의적 조정	○		○
	통일부	이라크 ODA 사업관리 강화 필요		○	○
		저조한 과태료 수납률에 대한 대책 필요	○	○	○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	○		○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발간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결산잉여금 최소화 및 효율적 운용 노력 필요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정상 추진		○	○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북지원 미집행 시 반환규정 필요		○	○
		민생협력지원 집행률 제고 필요	○	○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집행률 제고	○		○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재발 방지 필요		○	○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사무경비 생략적 활용방안 모색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관련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운영(정책건의·법정위원회운영)		○	○
		자문회의운영(국내·해외출범회의)		○	○
		자문위원역량강화(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	○		○
국방위원회 (4건)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	○	○
	방위사업청	기초비행훈련용헬기사업 관리 철저	○	○	○
		보라매(R&D)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리	○	○	○
행정안전위원회 (21건)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충원 방안 마련 필요	○		○
	경찰청	진술녹음제도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장비관리유지사업의 연말집행 관행 개선		○	○
		경찰 교육기관 연구성과격려금·초과강의로 부적정 편성·집행 개선 필요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경찰청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제 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사업 추진 부적정		○	○
		과도한 수탈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직제 미반영 조직·직위 운영 근절 필요	○	○	○
		사이버범죄 검거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지역교통방송국의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재정자립도 제고 노력 필요	○		○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	○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		○
		인건비(수습행정관)	○		○
		기타민간용자원급회수		○	○
		임대주택건립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투표권 보장 노력 필요		○	○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필요		○	○
		한국선거방송 운영 효과성 재검토 필요		○	○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편성 필요		○	○
		관서운영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주의 필요		○	○
		A-WEB 회원국 연회비 납부문제 개선 필요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	○	○
		정책연구개발		○	○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반연구비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과도한 이월 방지 필요		○	○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과도한 이월 발생 방지 관련)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문화재청	세입 징수실적 제고		○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실행 제고 필요	○	○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 리 사업 집행 제고		○	○
		문화재 돌봄인력에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필요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15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사업		○	○
		농기계임대사업	○		○
		폐업지원사업	○	○	○
		농촌유류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	○	○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	○
	산림청	사유림 매수단가 현실화	○		○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 지원	○		○
		원양어선 현대화	○		○
		귀어귀촌 활성화	○		○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
		함정정비유지(함정 응급수리의 정비비 절감마련 방안 필요, 연례적인 전용 지양 등)		○	○
		서부정비창신설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10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		○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	○
		지역투자촉진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펀 드 결성 지원)		○	○
		시장경영혁신지원(청년몰 영업유지율)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비 매칭)	○		○
		중진기금 정책자금 융자(부실률 관리)		○	○
		인력유입인프라조성(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 증도해지 문제)	○	○	○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실집행률 제고)	○	○	○
		창업인프라지원(지식산업센터 실집행 제고)	○	○	○
보건복지위원회 (25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	○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투명성 강화		○	○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개선		○	○
		정신재활시설 지원 확대		○	○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의처우 개선 필요		○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연례적 이월 개선		○	○
		장애인연금 사업 목적 외연구용역 수행 관행 개선 필요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
		아동발달지원계좌		○	○
		아동수당	○		○
		안정적 혈액 수급 대책 마련		○	○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활성화 도모 필요	○	○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	○	○
		생계급여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 홍보 강화 등	○	○	○
		HACCP 의무적용 확대 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실시(정확한 사업 추계 필요)	○	○	○
환경노동위원회 (24건)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
		전기차 구매보조 실집행 개선		○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집행관리 철저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		○
		법정부담금	○	○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	○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	○
		조기폐차 차주의 경유차 재구매 비율 감축 필요	○	○	○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	○	○
		공공폐수처리시설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기상청	장비도입 개선대책 마련	○	○	○
		항공기상정보제공 사용료 현실화	○	○	○
		기상과학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체수입 확보 노력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	○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	○
		직장어린이집지원		○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
		채당금지급		○	○
국토교통 위원회 (18건)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	○	○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	○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	○	○
		도시재생사업(균특회계)	○	○	○
		버스운전인력양성		○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	○
		공적임대주택사업 미착공 물량 해소 필요		○	○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	○	○
		행복도시건설 홍보	○		○
		자족기능유치지원	○		○
		복합편의시설 건립		○	○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		○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	○
	새만금개발청	간척사 박물관 사업관리 철저	○		○
		정책연구 연례적 이월		○	○
		투자유치 실적 개선 필요	○	○	○
		상수도 사업 보조사업자 관리 필요		○	○
		노마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마련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8	2019	2020
여성가족 위원회 (7건)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집행관리 강화		○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 습비 집행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 연례적 이·불용		○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집행률 제고		○	○
		서비스제공기관의 연례적 초과집행 방지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적 연례적 불용 개선		○	○

주: 특정 세부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나 동일한 주제·내용의 지적이 있는 경우 1건으로 기재
(예: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산분석시리즈 IV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76-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1-00136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